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스웨덴 —

홍세영 · 박현숙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스웨덴 -

A Study of Foreign Countries' Local Autonomy
- Sweden -

연구책임자 : 홍세영(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Honsg Sae Young

공동연구자 : 박현숙(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Park, Hyun-Sook

2018. 9. 30.

연구진

연구책임 홍세영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공동연구 박현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심의위원 정명운 선임연구위원

최 유 연구위원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요 약 문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전개

- 스웨덴 지방자치정부의 성격은 고대시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는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특징은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보다 지방분권의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부락 중심의 마을은 마을 공동사안에 대해서 정기적인 부락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
- 중세시대에는 유럽의 봉건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사회경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스웨덴도 지방분권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방 행정사무와 교회업무가 혼합되면서 그 구분이 모호하였음.
- 그러나 고대 부락중심의 단순한 행정체제에서 국가적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종교의 역할과 국가 행정사무의 분리할 필요성 높아지면서, 지방 정부(행정) 법(the Municipal Administration Act of 1862)이 제정됨.
- 이 법은 오늘날 운용되는 지방자치제의 성격에 근간이 되고 있음.
- 이후 근대화과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구수와 지역정부의 능력에 따라 많은 코뮌들이 합병되고 재정비되었음.

▶ 스웨덴 지방자치 관련 법제

- 1930년대 사민당 주도의 복지국가 건설은 과도한 중앙정부역할에 한계를 가져오면서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시켜나감.
- 스웨덴의 유럽화가 진행되면서 1989년 11월부터 스웨덴에 유럽지방자치헌장이 발효됨.

- 유럽지방자치현장은 스웨덴의 지방정부법이 새롭게 1991년 제정되는데 영향을 미침.
- 1991년 새지방정부법에 의해 스웨덴 지방정부의 현대적 체계를 제도화가 강화됨.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지역의 개편이었고 법 제정 이후 스웨덴은 크게 두 개의 지방자치구역인 코뮌(kommun)과 란스팅(lansting)로 구성되었음.
- 코뮌법에 근거하여 란스팅과 코뮌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
- 란스팅(Landsting)의 주요 역할로는 랜(Län)의 대중교통과 공공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 지원이 해당되며,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음.
- 코뮌(Kommun)은 주택, 도로, 상수도 및 폐수 처리, 학교, 공공 복지, 노인 복지, 아동보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관할.
- 스웨덴 사회서비스법은 코뮌이 자신의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에서부터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스웨덴의 경우 복지사무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멀지 않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자치가 사회개혁정책의 도구임과 더불어 스웨덴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음.

▶ 스웨덴 지방자치 관련 헌법과 코뮌법의 주요내용

- 스웨덴은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조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음.
- 이 조항을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를 차별하지 않고 민주주의 실현수단과 공권력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위상을 매우 확고히 세우고 있음.
- 스웨덴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과 유럽연합의 다층적 거버넌스 관리형태는 스웨덴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시켜주었음.

- 독립적이지만 자치의 자유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 코뮌의 자치행위는 자치 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사항과 종종 마찰을 일으킴.
- 자치단체의 자치행위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 단체는 때때로 불필요한 조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원칙은 자치단체 관련 법령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임.
- 코뮌법의 전문에는 지방자치가 ‘절대 총합은 아니다(aldrig vara total)’라고 명시하고 있고 전문에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국회(riksdag)라고 적시 되어 있음.
- 코뮌과 란스팅은 코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관장함에 있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기능하는 것임(제1장 제2조).
- 코뮌과 란스팅의 의결권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행사하고 있음.
- 란스팅 의원과 대리인 선출 투표권은 코뮌 의원과 대리인 선출 투표권을 가진 자에게 부여함(제1장 제8조).
- 구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스웨덴에서의 코뮌과 란스팅 분리에 관한 법령 (1979:411)에 의거함(제1장 제10조).
- 코뮌의 구성원은 코뮌에 인구등록이 된 자, 코뮌 내에 재산을 소유한 자, 지방세 납세 의무를 지닌 자로 하며 또한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지니고 코뮌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있음.
- 코뮌 의원과 대리인 선출 투표권은 코뮌에 인구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 당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서, 스웨덴 국적이거나 유럽연합 시민권을 가진 자,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자, 선거 전일까지 3년 연속으로 스웨덴에서의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투표권은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지니고 코뮌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여하고 있음(제1장 제7조).

▶ 스웨덴 지방자치제도의 특색

- 스웨덴 지방정부의 존립은 헌법에 근거하여 보장받지만 헌법에서 지방자치정부를 규정하는 상세한 규정은 없음.
- 헌법을 비롯한 스웨덴 국내법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틀을 구성하지만 그 목표를 성취하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고 있음.
- 스웨덴의 정치체제가 탈중앙화되어 권력이 분산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권력과 분산은 의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규정이나 조례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짐.
-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단 2개의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한 제8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 반해 스웨덴의 경우 정보조직법 제1장 제7조, 제8조, 제7장 제2조, 제7조, 제8장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12장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4장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5장 제6조, 제12조 등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 비하면 조문의 수가 훨씬 많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상세하고 많은 규정을 통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고 정치적 다수세력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변질 내지 왜곡을 막고 있음.
-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4장 제4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스웨덴 지방자치법에 해당하는 코문법에 의하면 코문과 란스팅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제1장 제3조).
- 사실상 코문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100%이며 국가 보조금은 없음. 왜냐하면 스웨덴은 헌법적으로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정치체제로 볼 수 있음.
- 오늘날 스웨덴의 지방분권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지로 스웨덴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했고,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지역 발전 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여기서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의 핵심은 바로 통치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 분산 이동임을 알 수 있음.

▶ 주제어 : 스웨덴 지방자치, 정부조직법, 코문법, 란스팅, 지방분권

Abstract

I.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 ▶ The Swedish local government is unique in that it is naturally occurring since ancient times. The geographical and nature characteristics were forced to evolve into a decentralized form rather than strengthen central control. In the Middle Ages, the European feudal system wa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but the boundary between regional and church work was vague.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Act of 1862 was enacted as the need to separate the roles of religion and state administration became increasingly necessary as the transition from a simple administrative system in ancient times to a national character. This law influences the modern local governments today. After that, with the experience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any kommun were merged and reorganized in practical,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

II. Legislation related to Swedish municipalities

- ▶ In the 1930s, the Social Democratic Party-led welfare state project occurred the excessive role of central government, realizing stronger regionalism

KLRI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82. And as Sweden began to Europeanize, the European Local Government Charter went into effect in Sweden from November 1989. The European Local Autonomy Charter has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Swedish law in 1991. Then in 1991, the New Local Government Act reinforced the modern system of Swedish local government. The core of the Act was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and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Sweden has largely consisted of two local autonomous regions, kommun and Lansting. Based on the law of Commonwealth, Lansting and kommun's roles are clearly distinguished. Landsting's main role is to support public services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and public health in Lan and has the authority to impose income taxes to cover operating expenses. kommun covers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housing, roads, water and waste treatment, schools, public welfare, senior citizens' welfare and child care. Moreover, the Swedish Social Servicing Act stipulates legally that the company should provide various social services to its residents from cash support. In Sweden,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most of the welfare services, providing welfare services that are not far from the general public. Not only is local autonomy a tool for social reform policies,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democracy in Sweden.

III. The main contents of the Swedish Constitution Law

- ▶ Sweden sets out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as means of realizing democracy in Article 1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ne of the basic laws of Sweden, which is the constitution. The clause is a very firm position by stipulating local governments in the Constitution as an institution of democratic realization and governmental authority, without discriminat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Swedish Constitution and the EU's multilayered governance management have further strengthened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Swedish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independent but limited autonomy in autonomy often creates friction with central government requirements for autonomous commu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tends to limit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t can sometimes be considered unnecessary. But the principle of local government is a priority in local law. The full text of the law states that local autonomy is not an absolute total. In addition, the text states that it is the National Assembly(Liksdag) that defines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 ▶ kommun and Lansting serve for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in governing all aspects of the law and other relevant laws (Article 1, Chapter 2). The voting rights of kommun and Lansting are exercised by local councils consisting of members elected by the general election. The right

KLRI

to vote for Lansting and his proxy shall be granted to members of kommun and those who have the right to vote for the election of their representative (Chapter 1 and 8). The matters concerning the change of parcels are subject to the Act on the Separation of kommun and Lansing (1979:411) in Sweden (Chapter 1 and 10). The members of kommun are those who are registered in the country, those who own property within the country, and those who are obliged to pay local taxes. It is also considered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who lives in kommun. The voting right to elect a representative and a representative is registered to the Swedish National or European Union citizenship for three consecutive years before the election, whichever is the third consecutive year before the election. This right to vote is also granted to those who have EU citizenship and live in the country (Chapter 1 and 7).

- ▶ The existence of Swedish local governmen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there is no detailed regulation in the Constitution that defines local government. While Swedish domestic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set goals and form a framework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room for the local government to do so on the detailed methods of achieving those goals. Although the political system in Sweden has been decentralized and deviated in power, all power and distribution have been approved by Congress.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or ordinances are mad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violated.

- ▶ In the case of Sweden, Chapter 1, Article 7, Article 8, Article 1, Article 7 of Article 1, Article 7 of Article 1, Article 7 of Article 1, Article 7 of Article 1, Article 8, Article 7 of Article 8 of Article 146 of the Constitution alone Compared to Korea, the number of condolences is much larger and more specific. Such detailed and numerous regulations reduce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s and prevent the corruption or distortion of local governments by political majority.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ne of the basic laws of Sweden, "the local government may impose taxes for the management of its offices." In addition, under the Cognition Act, Cognac and Lansting are authorized to impose taxes o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Chapter 1 and 3). In fact,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Cognac is almost 100 percent and there is no state subsidy. This is because Sweden ha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that local governments could lift taxes. In this regard, it can be seen as an independent political system from the central government.

VI. Characteristics of the Swedish municipal system

- ▶ Today, Sweden's decentralization is receiving much attention around the world, as it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and efficient. Indeed, Sweden has achieved fiscal and operational efficiencies due to decentralization, increased choice of public services to citizens, and simultaneously achieved fiscal efficiency, high public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by providing the specialized and individual

KLRI

services they need. First of all, the core of decentralization is the drastic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to local governments.

- ▶ **Keywords:** Swedish local government, Government Organization Act, kommun, Landsting, Decentralization

목차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스웨덴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27

제1절 연 혁	29
1. 스웨덴 개요	29
2. 스웨덴 지방자치제도 연혁	31
제2절 이론 및 근거	35
1.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	35
2.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Multi-Level Governance: MLG)	36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39

제1절 스웨덴의 행정 구조	41
1. 스웨덴 행정구조	41
2. 스웨덴 지방정부	44
3. 지방 의회(Fullmäktige)	45
4. 주요 위원회(Styrelse)와 분과별 위원회(nämnder)	46
5. 투 표	46

제2절 지방정부의 행정 사무	47
1. 지방 정부의 행정 사무 구조	47
2. 란스팅의 주요 행정사무	48
3. 코문의 주요 행정사무	50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55

제1절 스웨덴 헌법상의 지방자치	57
1. 스웨덴 헌법의 구조	57
2. 코문에 관한 입헌적 관점	63
제2절 스웨덴 지방자치법의 구조	65
제3절 2017년 코문법의 주요내용(Kommunallag)	72
1. 코문의 기초	72
2. 코문의 관할영역	73
3. 코문과 란스팅의 조직 및 활동	73
4. 피선인(선출직)	74
5. 지방의회(의원)	78
6. 이사회(행정위원회)와 기타 위원회	86
7. 고용직(직원)	92
8. 참여와 투명성	95
9. 코문 간 협력	97
10. 코문 담당 사안의 이관	100
11. 재무관리	102
12. 감 사	105
13. 적법성	107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 111

제1절 시사점	113
제2절 결 론	117
참고문헌	11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스웨덴의 지방분권화는 지리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다. 특히 1862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와 지방행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969년 지역정부 개혁에 따라 1974년 2498개의 지역이 284개의 지역으로 개편되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지방분권화로 인해, 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였으며,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들이 필요한 욕구에 신속히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충관계로만 보았던, 재정의 효율성, 질 높은 공공서비스, 지역 발전 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분권화의 핵심은 통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로 지역 간의 평등과 균형 발전임 민주주의가 성숙된 스웨덴 사회에서 지방분권화는 중앙권력의 분권화(수평적 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수직적 분권)의 성공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현 한국의 통치상의 권한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는 지역불균형 발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 나아가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승자독식체제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 간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 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내용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헌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것이라고 하였다¹⁾. 여기에 대한 근본 철학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웨덴의 지방분권화된 행정체계는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실현의 범위와 규모는 지방자치 완성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정치 분석과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평가받는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스웨덴의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킨 형성배경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지방분권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스웨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과정과 그 영향요인, 맥락 등을 탐색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성숙된 지방자치제도를 구성하기 위한 제반 법, 제도, 사회문화 등 맥락적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입법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1987년 개헌도 직선제로 인해 독재가 철폐되고 민주화가 달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민주화에 그쳤을 뿐이고 실질적인 민주화는 달성되지 못하였고 결국 촛불집회와 탄핵정국으로 이어졌고 이는 87년 헌법체제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것 이었다²⁾. 이는 국가가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1) 김다윗(2017), 지방분권 개헌/제2국무회의, 국토 2017년 12월호(통권 제434호), 45-45.

2) 문병효(2017), 토지공법연구, 지방분권과 개헌, Vol.79, pp.761-787.

조치를 재정비하고 국회가 그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헌법 속에 투영된 지방자치 규정, 스웨덴 지방정부법, 지방 조례 등 관련 법원들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의 행정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식민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중앙 집중적인 국가가 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육과 문화, 경제, 정치, 행정 등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있고 지방은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다³⁾. 결국 이는 지방의 인구해체를 야기 시키고 심각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일어나고 있다. 균형발전을 이룬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지방정부들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정부와 주민들간의 관계, 행정 구조, 지방의회 구조 등 다각적 측면에서 탐색해보는 것이다. 이는 법이 선언적이고 형식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수준에서 구체화됨으로써 긍정적인 법적 효력과 성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스웨덴의 지방자치 관련 헌법과 법률을 분석하여, 스웨덴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체계적 분석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수행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고, 이후 기술한 내용에 대한 쟁점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게 자문을 받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웨덴 지방자치 단체인 란스팅과 코문의 자치권 및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그 대상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및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핀란드 및 노르웨이,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강한 헌법적

3) 문병효(2017), 토지공법연구, 지방분권과 개헌, Vol.79, pp.761-787.

지위에다 매우 높은 정치적 자율성과 재정적 독립을 누리는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지방분권 물결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결정을 지자체가 직접하게 되는 등 지방정부에게 많은 기능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1980년 후반에는 지자체의 다양한 기능을 민영화하고 이해관련기관에 이관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공급부문의 경쟁 유도 및 민간부문의 체질 강화를 통한 본격적인 시장중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스웨덴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제도 관련 법체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스웨덴 헌법상 보충성 원칙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전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란스팅 및 코문)의 구성 및 조직, 그리고 법적 지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자치행정의 주요 내용과 스웨덴 지방자치법 중의 하나인 코문법의 최신 내용을 망라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웨덴 헌법에 기초한 지방자치제도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내용과 연관된 헌법규정은 가능한 한 본문에 담고자 하며, 특히 2017년에 스웨덴의 코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코문법의 주요내용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제1절 연 혁

제2절 이론 및 근거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제1절 연 혁

1. 스웨덴 개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 왕국(Konungariket Sverige)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⁴⁾ 중에서 가장 큰 국가로, 국토 면적은 449,964 km^2 이다. 긴 해안선과 깊은 숲들이 많은 스웨덴의 기후는 북쪽부터 남쪽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수도는 스톡홀름이며, 2017년 11월 기준으로 인구는 10,093,734명이다. 스웨덴의 민족으로 북구 게르만족이 95%를 그리고 사미(Sami)족이 0.2%를 구성한다.

스웨덴의 언어는 스웨덴어이다. 스웨덴어는 인도유럽어족의 게르만어군에 속하며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페로우어와 함께 게르만어군의 한 분파인 북게르만어를 이룬다⁵⁾. 인도유럽어족 중 노르웨이어와 스웨덴어가 유일하게 성조어이다. 표준 스웨덴어는 스톡홀름이 속한 옴란드(Upland)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스베아(Svea) 방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사용되는 표준 스웨덴어와 함께 지역에 따라 지역 표준방언이 있다.

4) 통상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범주는 좁게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이며 넓게는 아이슬란드와 핀란드를 포함하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북유럽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라는 명칭으로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5) 박현숙, 『세계언어백과-스웨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스웨덴은 16세기 옅살라 종교 회의에서 국교를 가톨릭교에서 신교인 루터교로 변경하였다. 현재 스웨덴의 국교는 루터교(복음루터파)로 87%의 국민들이 루터교에 속한다. 국민 대부분이 국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 출석 비율은 현저히 낮다. 스웨덴의 종교는 의식적인 역할을 넘어 문화적인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이민과 함께 종교적인 풍경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이외의 종교로는 가톨릭교, 그리스정교, 유대교 등이 있으며, 최근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이슬람교의 비율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입헌군주국가 스웨덴의 현 국왕인 칼 구스타프 16세(Carl XVI Gustaf)는 1973년 9월 15일에 즉위했다. 스웨덴의 왕실은 11개의 왕가를 거쳐 약 1천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현 베르나도트(Bernadotte)왕가의 시조는 프랑스 출신의 칼 요한 14세(Karl XIV Johan)이고, 이 왕가는 18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역대 가장 긴 왕조를 통치해왔다. 오늘날 스웨덴의 왕실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국민의 존경을 받는 왕실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국왕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이다. 따라서 국왕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며,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방문, 국회의 개원, 외교 사절의 임명 등의 의례적인 직무에 국한된다. 1980년 왕위계승법개정 결의를 통해 왕위 계승권 자를 장남에서 장자로 변경함으로써 스웨덴은 성별에 관계없이 첫 번째 아이가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최초의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왕위 계승자로 결정된 왕세녀 빅토리아(Victoria)공주는 2010년 6월 평민 출신 다니엘 웨슬링(Daniel Westling)과 혼인하였다.

한편 스웨덴은 여타 입헌군주국과 달리 수상 후보자 임명권을 국회의 의장이 행사한다. 수상은 국회의장이 정당 대표들과 협의 후에 후보자로 지명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수상으로 임명된다. 내각은 수상, 11개 중앙 부처 및 23명의 각료(복수장관 제)로 구성되며,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2014년 9월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함에 따라 사민당 당수인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이 2014년 10월에 취임했으며 2018년 9월 총선에서 다시 승리함으로써 재임을 역임하고 있다. 현 사민당 연합 정권은 세계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부를 구성하여 선진적인 양성평등 국가에 앞장서고 있다⁶⁾.

6)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a-feminist-government/> (2018.09.27. 최종 방문)

그리고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중에 하나로, 복구의 낙원이라고 불린다. 복지국가로서의 첫걸음은 스웨덴 사민당의 장기 집권이 시작된 1932년부터로, 완전 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시장 정책과 노조의 연대 임금정책과 함께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이후 스웨덴은 사회취약계층만을 위한 단순한 구제시스템이 아닌, 국민 모두에 대한 의료혜택, 실업수당, 무상교육 그리고 노후연금 등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⁷⁾. 1970년대 국제 석유파동은 스웨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분권화와 민영화에 기반한 탈중앙화였다. 1980년대 이후 스웨덴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공공관리개혁(NPM: New Public Management)이 수행되면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은 강한 지방분권형과 함께 '자유 선택 사회'를 지향하며, 이는 복지제도가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선택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의미하였다⁸⁾.

2. 스웨덴 지방자치제도 연혁

스웨덴의 지역정부는 고대시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는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⁹⁾.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특징은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보다 지방분권의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부락 중심의 마을은 마을 공동사안에 대해서 정기적인 부락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세시대에는 유럽의 봉건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사회경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스웨덴도 지방분권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700년대부터 스웨덴 지역은 교회에 속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자치제 형태로 행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오늘날 스웨덴 교구(the parishes)의 전신이 되었다. 1800년대 중반 까지 스웨덴은 교회를 중심으로 나눈 교구(the parishes)를 중심으로 행정

7) 미야모토 타로 저, 임성근 옮김, 2011, 『복지국가전략(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8) 홍세영 · 김철주 · 오수경(2018), 민영화 개혁과 스웨덴 의료체제의 지속성과 역동성, 스칸디나비아연구 21호, p 71-118.

9) Sandalow(1971), 1971 Local Government in Sweden,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Scholarship Repository, p 769.

단위가 이루어졌으며 교구는 지역의 빈민이나 주민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지방정부와 교구의 역할이 모호하였다¹⁰⁾.

1800년대 스웨덴은 길드제 폐지, 양원제 의회 확립, 교육법 제정 등 일련의 사회변화는 행정업무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교구와 지방자치 구역이 일치하면서 행정 업무의 중복과 모호성 등이 혼재하였다¹¹⁾. 이런 배경은 1862년 지방 행정 법(the Municipal Administration Act of 1862)을 제정하게 만들었다. 지방행정법의 핵심은 교회사무와 주민 사무를 분리하는 것이었다¹²⁾. 교회사무는 국교의 교구가 담당하고 주민사무는 도시 및 시골 지방정부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¹³⁾. 이 법은 1991년 새지방정부법에 일부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될 정도로 스웨덴 지방정부의 현대적 체계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행정지역의 개편이었다. 법 제정 이후 스웨덴은 크게 두 개의 지방 자치구역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제 1차 코뮌(primary communes)과 제 2차 코뮌(secondary communes 또는 landsting kommuner)이다. 스톡홀름, 요테보리, 말뫼의 3개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위의 두 개의 코뮌에 속해있었으며, 각자 다른 기능을 하고 있었고 지방 관료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¹⁴⁾.

제 2차 코뮌은 광역자치구역으로 탈중앙화된 국가 행정구역을 목표로 하였다. 즉 1862년 법을 통해 만들어진 2차 코뮌은 광역권차원까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해졌지만 1차 코뮌보다는 권력과 책임이 강하지 않았다. 2차 코뮌의 주요 책임은 공공의료, 방문간호, 사회복지, 모자보건, 치과진료, 정신건강, 교육이었으며, 이 중 공공의료의 경우 전체 지역예산의 4분의 3 이상의 지출을 차지할 만큼의 역할이 컸다. 1969년 개혁당시 900개의 1차 코뮌은 300 에서 800, 000명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컸다¹⁵⁾.

10) <https://www.revolv.com/page/Swedish-municipal-reforms-of-1862> (2018.09.27. 최종 방문)

11) 변광수, 김인철, 박노호(1995), 복지국가 스웨덴의 지방자치 - 균형적 지역발전의 모델, pp 164-165

12) <https://www.revolv.com/page/Swedish-municipal-reforms-of-1862> (2018.09.27. 최종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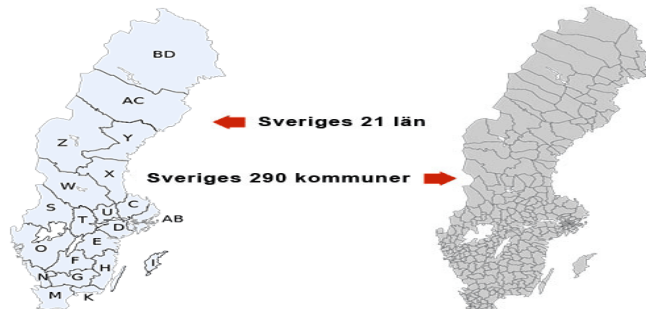
13) 변광수, 김인철, 박노호(1995), 복지국가 스웨덴의 지방자치 - 균형적 지역발전의 모델, pp 164-165

14) Sandalow(1971), 1971 Local Government in Sweden,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Scholarship Repository, p 770

15) Sandalow(1971), 1971 Local Government in Sweden,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University of

1862년 지방정부 개혁으로 당시 1950년대 “합병개혁”이 있기 전까지 란스팅은 25개, 코문은 2,498개 였다. 1950년대까지 스웨덴의 근대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지리적이고 인구수에 따른 새로운 코문의 합병이 요구되었다. 스웨덴 사회에서의 도시화는 각 코문의 인구의 불균형성을 낳았으며, 인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지방행정의 비효율성과 부적합성을 양산하였다.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32년 스웨덴 정부는 합병에 대한 법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상당기간동안 이루어졌고 1946년 국회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합병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법 개정이후에도 청문과 국민적 담론을 모으는데 상당한 기간을 거치면서 첫 번째 합병 개혁은 1952년이 이루어졌고 이는 코문의 수를 절반이상 줄이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합병 개혁은 1962년에서 74년 사이에 수행되었는데 1,038에서 278개로 감소하였다¹⁶⁾. 지역간의 합병은 1990년대에 도 지속되어 여러 개의 란스팅이 합병하여 스코네와 고틀란드는 코문과 란스팅의 역할을 병합하는 지역자치구(region)을 형성하였고¹⁷⁾ 2018년도 기준으로 스웨덴의 행정구역은 21개의 광역시인 란스팅과 290개의 지방자치정부인 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 그림 1 > 스웨덴의 지방행정구역



출처: <https://www.so-rummet.se/fakta-artiklar/sa-styrs-sveriges-kommuner/> (2018.09.27 최종방문)

Michigan Law School Scholarship Repository, p. 770.

16) Swedish Government(2005), Local government in Sweden - organisation, activities and finance, Ministry of Finance, p 5.

17) Swedish Government(2005), Local government in Sweden - organisation, activities and finance, Ministry of Finance, p 5.

1982년 스웨덴은 헌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시켰다. 당시 스웨덴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으며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요구되었으며 그 방편이 지방분권의 강화였다. 그리고 지방분권은 신공공관리(Newn Public Management; NPM)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신공공관리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비효율성과 재정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영역에 기업이나 민간 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성과중심, 효율성, 민영화와 작은 정부 등의 신자유주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스웨덴도 1980년대 신공공관리(NPM)가 도입되면서 행정 및 복지 사무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사실 공공관리(NPM)는 스웨덴 사민주의 사상과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희소한 공공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정책 입안가, 전문가 등에게 호소력이 있었다¹⁸⁾. 스웨덴의 신공공관리 개혁은 더욱더 지방정부의 결정권을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되었으며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민영화를 가져오게 되었다¹⁹⁾.

그리고 스웨덴의 지방분권의 형태는 유럽통합 과정 속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1949년 유럽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가입하였다. 1988년 유럽지방자치헌장에 서명하고, 이듬해인 1989년 8월 비준하였고 1989년 11월부터 스웨덴에 유럽지방자치헌장이 발효되었다. 유럽지방자치헌장은 스웨덴의 지방정부법이 새롭게 1991년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05년 제출된 의회권고문 163이 주목받으면서 자치정부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강화되었고 좀 더 평등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스웨덴은 유럽자치헌장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시민과 자치정부가 자신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강화시키고 있다. 현재 스웨덴 지방 행정 기관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²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구들은 선거에 따라 의원들을 선출하고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사회서비스와 같은 일선의 복지서비스들의 대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18) Byrkjeflot, H., & Neby, S(2004). The decentralized path challenged? Nordic healthcare reforms in comparison. Stein Rokkan Centre for Social Studies. 2004. pp 14-16

19) Svanborg-Sjövall(2014), Privatising the Swedish Welfare State, economic affairs volume 34, number 2, pp 184-185.

20) Wagenaar-Kroon, L and Mosler-Tornstroms, G (2013), Local and Regional Democracy in Sweden,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p 8.

제2절 이론 및 근거

1.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

스웨덴은 유럽국가들 중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하다. 이는 헌법의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정부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헌법의 정부조직법 14장 3조에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정부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례성의 원칙을 통해 스웨덴 지방정부가 필요이상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인 동시에 스웨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만약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스웨덴 의회(Riksdag)는 지방자치정부의 원칙을 존중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한에 최소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정부는 공공의 이해에 대한 지역 및 지방 사안을 결정할 때 지역정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정의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사안들의 특징은 법안에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다른 사안들은 지방자치정부의 원칙과 법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²¹⁾.

비례성의 원칙의 핵심은 지방자치정부에 어떠한 제한도 제한하는 목적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해석하면 중앙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지방정부를 보호하는 조치이다. 또한 조항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 책임을 배분할 때 업무의 범위와 성격과 효율성과 경제성의 요구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로 규정하면서 업무 배분에 있어서 적절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²²⁾. 비례성의 원칙은 지방분권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스웨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사업이나 활동 등을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스웨덴 지방자치정부들은 자기의 지역의 욕구나 이해관계에 맞는 사업들을 자유롭게 추구할

21) Sveriges Riksdag (2016), The Constitution of Sweden- the fundamental laws and the riksdag act. p. 13

22) Wagenaar-Kroon, L and Mosler-Tornstroms, G (2013), Local and Regional Democracy in Sweden,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pp 8-9.

수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서비스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균형 잡힌 활동을 하고 있다²³⁾

2.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Multi-Level Governance: MLG)

1995년 스웨덴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이후, 스웨덴에서도 유럽 통합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규정은 스웨덴 헌법이나 각종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점점 더 지방자치정부는 유럽연합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도 서로 상호작용을 높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유럽연합의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Multi-Level Governance: MLG)로 설명할 수 있다. MLG은 정치적 개념으로 유럽통합과정에서 모든 정부수준을 각자 분명한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은 회원국, 지방 및 지역이 협력관계에 기반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정활동(Coordinating Act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⁴⁾.

스웨덴의 경우 1995년 유럽에 가입할 당시 스웨덴 지방자치정부나 광역시 의회는 유럽연합에 의한 시스템이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스웨덴의 지방과 지역은 60% 이상 유럽회원국과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 이후 ‘지역의 유럽화(Europe of Region)’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정부는 점점 더 유럽연합에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역적 수준에서 추구하는 정책은 개발정책이다. 지역의 공공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주요 사안이다.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수행하는 복지정책과 구별된다²⁵⁾.

23) Pierre, J (2016), The Oxford Handbook of Swedish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p. 9, 143

24) Loughlin, J.(2010), Federalism, regionalism and local government: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ransforming the nation-state. In: European Political Science, vol.7, 2008, p.477; PIATTONI S., Multi-level Governance: a Historical and Conceptual Analysis. In: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vol.31, no.2, 2010, p.164.

25) Montin, S. (2011). Swedish Local Government in Multi-level governance, The Road to Europe: Main Road or

MLG의 개념은 스웨덴 헌법에서 모호하게나마 내포되었다. 2008년에서 2009년 논의를 거쳐 2010년에 통과된 당시 개정된 헌법에서 정부도구 부분에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다. 핵심 내용은 비례성의 원칙과 현재의 지방정부의 확대된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개정은 강력한 지방자치정부를 가능하게 했고 스웨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주 관계 중심에서 유럽 연합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층적 거버넌스체계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비위계적이고 협력을 중요시 하는데 스웨덴 헌법에는 구체적으로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층적 거버넌스를 포스트 헌법적 성격(post Constitutional)이라고 묘사 한다²⁶⁾.

Backward Alley for Local Governments in Europe?, Chapter: Swedish local government in multi-level governance, Publisher: Vanden Broele, Editors: Reynaert, H, Steyvers, K, Van Bever, E

26) Fwlrwniua, S. (2015), Multi-Level Governance as 'Post-Constitutional' Politics: Subnational Actors and the Swedish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41. pp 301-302.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제1절 스웨덴의 행정 구조

제2절 지방정부의 행정 사무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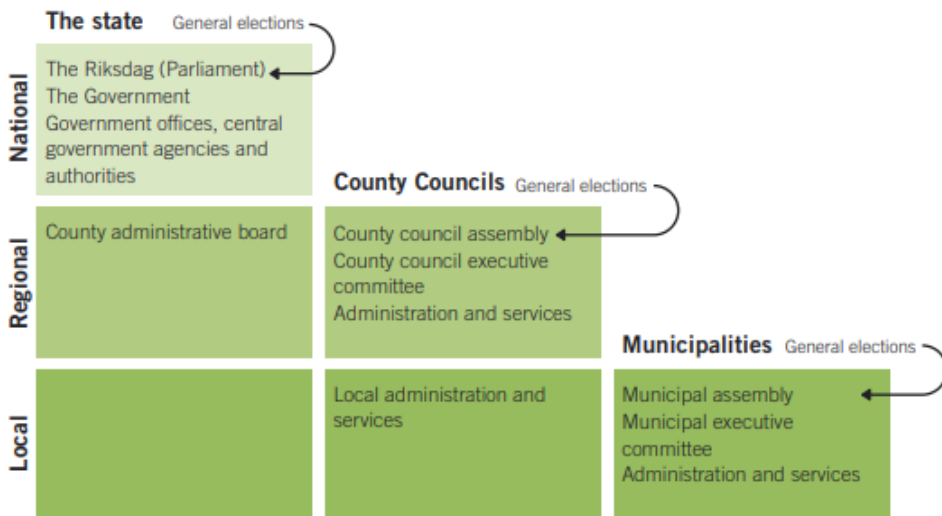
제1절 스웨덴의 행정 구조

1. 스웨덴 행정구조

헌법에 근거할 때 스웨덴은 단방국가(United State)이며, 정치적으로 크게 중앙정부(Central)와 지방정부(local)로 2차원으로 분류한다. 행정적으로는 중앙, 지방(Regional), 지역(Local)을 기준으로 3차원적으로 나누어진다. 지방의 행정관할 구역을 램(län)이라고 하며 여기서 행정은 지방의회(county councils, landsting)와 주정부로 다시 분류된다. 주정부(County Administrative Board, länsstyrelse)는 감독과 지방개발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의회는 21개이며, 한국의 도에 해당되며, 스웨덴어로는 램스팅(Ländsting)이라고 한다²⁷⁾.

27) Montin, S. (2011), Swedish local government in multi-level governance/ Reynaert,H,Steyvers, K., Van Bever, E.(eds.), The Road to Europe:Main Road or Backward Alley for Local Governments in Europe? Brugge: Vanden Broele

< 그림 2 > 스웨덴 행정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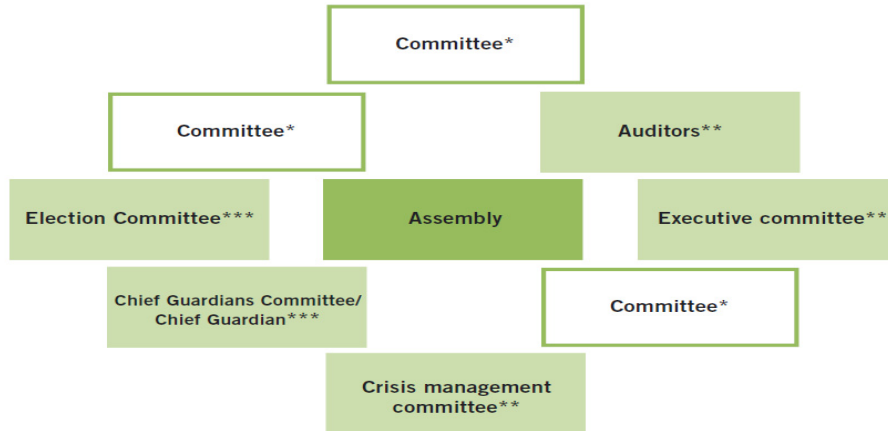
출처: Swedish Government(2005), Local government in Sweden - organisation, activities and finance, Ministry of Finance. p. 4/ <https://www.vannas.se/default.aspx?di=2056> (최종방문, 2018.7.7)

지역정부는 290개이며,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스웨덴어로는 코뮌(Kommuner)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지방정부를 공식적으로 자치정부(Self-government)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들 사이에 평등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행정시스템은 위계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이다²⁸⁾. 각 정부들은 의회와 행정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각 기관은 국민(국회의원은 시민, 지방 의원은 주민 따라서 스웨덴의 지방행정은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을 통한 교육과 복지를 책임, 인프라 개발, 문화 등을 책임지고 있다. 란스팅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외에 운송, 재활 등을 담당하고 있다²⁹⁾.

28) 단 고틀란드(Gotland)지방은 예외적이다. 고틀란드는 발틱해에 있는 섬으로 란스팅과 협력하여 자기 정부를 이끌어 간다.

29) Sandalow(1971), 1971 Local Government in Sweden,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University of

< 그림 3 > 지방정부의 정치 조직 구조



출처: Swedish Government(2005), Local government in Sweden - organisation, activities and finance, Ministry of Finance. p. 10/ <https://www.vannas.se/default.aspx?di=2056> (최종방문, 2018.7.7)

스웨덴은 국가적, 지방적, 지역적 수준에서 의회를 가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회가 있으며 릭스닥(Riksdag) 이라고 하며 스웨덴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릭스닥(Riksdag)은 스웨덴의 최고의 정치 결정 기구로 34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릭스닥(Riksdag)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출한 새로운 법률제안서는 의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스웨덴 정부 여러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400여개의 중앙 정부 기관들과 공공 행정 기관들이 있다³⁰⁾.

중앙정부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와 관료들로 구성된 행정부, 그리고 행정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와 지역정부는 의회와 이사회로 구성되어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관계는 평등하고 상당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위계적이기 보다는 합의적으로 결정된다. 각 지방과 지역의회나 사안

Michigan Law School Scholarship Repository, p 766.

30) <https://www.government.se/how-sweden-is-governed/the-swedish-model-of-government-administration/> (2018.09.27. 최종 방문)

은 지역의원, 행정위원회, 그리고 시간제 정치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코문과 란스팅 의회는 지방과 지역수준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모든 의회는 거주민들 즉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의회, 사안은 행정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에 의해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지방과 지역 수준에서 선출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일제 정치인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정치 활동을 한다³¹⁾.

2. 스웨덴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존립은 헌법에 근거하여 보장받지만 헌법에서 지방자치정부를 규정하는 상세한 규정은 없다. 헌법을 비롯한 스웨덴 국내법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틀을 구성하지만 그 목표를 성취하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스웨덴의 정치체제가 탈중앙화되어 권력이 분산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권력과 분산은 의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규정이나 조례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에 기반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³²⁾.

스웨덴의 지방의회는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요소를 혼합한 기관 절충형이다. 절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상호대립되지 않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형태이다. 이는 집행기관인 시장과 의결기관인 의회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상호협력을 최대한 유지하여 자치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면서도 신중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³³⁾.

31) <https://skl.se/tjanster/englishpages/municipalitiescountycouncilsandregions/swedensdemocraticsystem.1301.html>
(2018.09.27. 최종 방문)

32) Montin, S. (2011), Swedish local government in multi-level governance/ Reynaert,H,Steyvers, K., Van Bever, E.(eds.), The Road to Europe:Main Road or Backward Alley for Local Governments in Europe? Brugge: Vanden Broele

33) 임승빈(2015), 「지방자치론」, 법문사, pp. 284-285

란스팅(Ländsting)의 정치적 업무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이사회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전자는 지방의 선출직 의원들이고 후자는 지방행정관료들이다. 어떤 공공기관은 랜(Län)의 이사회에 의해서 지방적 지역적 수준에서 동시에 운영되기도 한다³⁴⁾. 각 랜(Län)은 각각의 광역시의 행정 구역으로 광역 행정 이사회(Länsstyrelsen)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 핵심 정부이다. 광역시 행정 이사회는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간에 포괄적인 정책의 목표를 조정한다³⁵⁾.

지역적 수준에서는 290개의 코뮌이 있다. 각 코뮌은 선출된 국회의원이 있고 코뮌의회가 있으며 이들은 코뮌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코뮌 의회는 코뮌 행정 이사진들을 임명하고 코뮌의 업무를 이끌어가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³⁶⁾.

3. 지방 의회(Fullmäktige)

스웨덴의 각 지역마다 지방의회(Fullmäktige)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4년 마다 행해지는 국회의원의 직접 선출에 의한 의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며 코뮌 및 란스팅의 기본 결정권은 선출된 코뮌 의회 및 란스팅 의회의 의원들에 의해 행사된다. 그들은 코뮌과 란스팅 그리고 예산과 세율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한다³⁷⁾. 의회는 의원들 사이뿐만 아니라 코뮌과 란스팅의회는 서로 협력 기반하고 있다. 지방자치 법에 근거하여 의회는 확보할 의원 수를 결정하는데 코뮌 또는 란스팅의 유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작은 코뮌은 적어도 31명의 의원들을 확보해야 하며, 큰 란스팅과 스톡홀름 코뮌은 적어도 101명을 확보해야 한다. 의원들을 선출직 대표(förtroendevald)라고 회계 감사관, 위원회의 위원들과 후보자, 정치인들이 있다³⁸⁾.

34) <https://www.government.se/how-sweden-is-governed/the-swedish-model-of-government-administration/> (2018.09.27. 최종 방문)

35) http://www.mlit.go.jp/kokudokeikaku/international/spw/general/sweden/index_e.html/ (2018.09.27. 최종 방문)

36) <https://www.government.se/how-sweden-is-governed/the-swedish-model-of-government-administration/> (2018.09.27. 최종 방문)

37) [https://sv.wikipedia.org/wiki/Kommunfullm%C3%A4ktige_\(Sverige\)](https://sv.wikipedia.org/wiki/Kommunfullm%C3%A4ktige_(Sverige)) (2018.09.27. 최종 방문)

38) Regeringen(2008), Kommuner och landsting - organisation, verksamhetoch ekonomi, p. 8

4. 주요 위원회(Styrelse)³⁹⁾와 분과별 위원회(nämnder)⁴⁰⁾

코문이나 란스팅 의회(fullmäktige)에서는 선출직 의원들 중에서 위원회(nämnder)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수한 영역별로 여러개가 있다. 교육 위원회, 문화 및 여가활동 위원회, 환경 위원회, 그리고 사회 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의 일이다. 위원회들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⁴¹⁾. 분과별 위원회는 (Nämnderna) 전술했듯이 선출직 의원들로 지역의 전반적인 사안을 의회의회(fullmäktige)를 통해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있고, 구체적인 행정업무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따라서 지역의 사안이나 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위원회로 볼 수 있다⁴²⁾.

5. 투 표

스웨덴에서 국회, 지방, 지역, EU 차원에서 선거가 치뤄진다. 각 정부들은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보편적, 비밀, 직접 선거 방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거제도는 정당투표이자 비례대표 방식이다. 즉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며, 득표수를 획득한 정당들은 그 수의 비율별로 국회의원이 배분된다. EU 를 제외한 선거는 4년 한번, 그리고 9월 두 번째 토요일에 동시에 수행되며, EU 선거는 5년마다 치뤄진다⁴³⁾. 주지할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는 시민권에 지방과 지역의원 선거는 거주권에 입각하고 있다.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의 스웨덴 시민들로 이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할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연합(EU)시민이거나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와 같은 노르딕 국가 시민은 지방과 지역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해당 코문에 주민으로 등록되어있고, 선거일까지 18세가 되었으면, 코문 및 란스팅 의회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39) 코문과 란스팅을 위한 의무(필수)위원회

40) 각 코문과 란스팅의 위원회를 결정하는 위원회

41) <https://skl.se/demokratiledningstymning/politiskstymningfortroendevalda/kommunaltstjyresastyrskommunenochlandstinget/sastyrskommunen.735.html> (2018.09.27. 최종 방문)

42) Regeringen(2008), Kommuner och landsting - organisation, verksamhetoch ekonomi, p. 8

43) <https://www.val.se/servicelankar/other-languages/english-engelska/the-swedish-electoral-system.html> (2018.09.27. 최종 방문)

갖는다. 다른 외국 국적의 시민들도 해당 선거일의 3년 전부터 스웨덴에 주민으로 등록되었다면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⁴⁴⁾).

< 표 1 > 의회의 임무

- 위원회의 위원들과 후보자들을 선출한다(예여타 위원회 등).
- 예산, 세금 그리고 코문 서비스 대금과 같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 코문 행정의 조직과 운영 형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의회의 의원의 발론과 질의를 검토한다.
- 연간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평가를 통해 코문 운영(사업)을 총괄하며, 동의/비동의에 책임이 없다.
- 일정한 질서문제(ordningsfrågor)를 위해 지역(lokal)조례(또는 지시)를 발행한다.

특정한 경우에 의회는 결정권(위임)을 위원회 또는 여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출처: Regeringen(2008), Kommuner och landsting - organisation, verksamhetoch ekonomi, p. 9

제2절 지방정부의 행정 사무

1. 지방 정부의 행정 사무 구조

스웨덴은 법치 국가로 공식적인 모든 영역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스웨덴의 지방정부의 행정 사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1992년 지방자치법이 있으며, 이 법은 코문과 란스팅의 전체적인 행정업무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⁴⁵⁾. 구체적인 행정 사무는 다양한 법에 의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바로 사회 서비스(사회 서비스 법 2001:453), 보건 의료(보건 의료 법 1982:763), 환경 보

44) Regeringen(2008), Kommuner och landsting - organisation, verksamhetoch ekonomi, p. 9

45)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9577b5121e2f4984ac65ef97ee79f012/the-swedish-local-government-act>, p 3 (2018.09.27. 최종 방문)

호(환경보호 법 1998:808), 초등 및 고등학교(교육 법 1985:1100)등이 포함된다⁴⁶⁾. 몇몇 특별 법들은 정부나 공공기관(statliga myndigheter)이 법규(förordning)나 조례(föreskrift, 조례 또는 명령, 지시)로 보완할 수 있는 소위 기본 법(ramlag)이다⁴⁷⁾.

< 표 2 > 코문법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

- 코문 분할 및 코문 시민(memlemskapet)*
- 코문 및 란스팅의 직권(befogenheter), 조직 및 운영 형태
- (투표)선발된 대표자 (de förtroendevalda)
- 의회 및 위원회(fullmäktige och nämnderna)
- 의사 결정 참여권(medbestämmandeformerna)
- 재무 행정(den ekonomiska förvaltningen)
- 감사(revisionen)
- 코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합법재판(심사) laglighetsprövningen i domstol av kommunala beslut

* 주민등록 부에 등록되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주민세(시민세, kommunalskatt)가 부과되는 자는 코문 시민이다. 코문 시민은 또한 란스팅의 시민이기도 하다.

출처: Regeringen(2008), Kommuner och landsting - organisation, verksamhetoch ekonomi, p. 7

2. 란스팅의 주요 행정사무

란스팅은 한국의 도 또는 광역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스웨덴의 기원은 교구(parish)에 기원들 두고 있으며 1864년 지방행정법 제정 이후 란스팅으로 개편되었다. 란스팅에서 70%이상의 업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며 주요 업무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스웨덴의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공공의 영역이었으며 특히 지방의 책임이 강했다. 재정자립도는 80%이며 전체 30%를 고용하는 등 고용주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46) 박노호(2015), 스웨덴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증, 한국국제지역학회보 제 4집 pp 77-78

47) Regeringen(2008), Kommuner och landsting - organisation, verksamhetoch ekonomi, p. 7

< 표 3 > 란스팅의 주요 행정 사무

종류	내용
보건의료	Ländsting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조세에 의해 충당되며 자치지방정부의 원칙에 따라 Ländsting은 지역 사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스웨덴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소에서 환자들은 병원의 의료자원과 기술적 처치를 요하지 않는 환자나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다. 1차의료원은 예방적 보건사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전문화되고 의료적 처치는 종합병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과 치료	치과치료는 공공 민간 기관에서 제공되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Ländsting이다. 치과치료는 19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무료이다.
지방서비스	몇몇을 제외하고는 공공 운송서비스는 란스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방식은 지방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3개의 란스팅(Skåne, Västra Götaland and Halland) 과 1개의 코문 (Gotland) 은 지역개발에 대한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란스팅이라고 부르 기 보다 지방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skl.se/tjanster/englishpages/municipalitiescountycouncilsandregions/theroleofthecountycouncilsandtheregio ns.1303.html> (2018.7.7 최종방문)

스웨덴 의료법은 란스팅이 의무적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요 책임자가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업무는 광역시의 관할 하에 두고 있다.

< 표 4 > 스웨덴 보건의료법

분류	내용
목적	제2항 : 보건의료서비스는 평등한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강과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돌봄은 개인의 위엄과 모든 인간은 모두 동등한 위엄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분류	내용
	보건의료서비스를 우선순위는 서비스의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광역시 의회 (County Council) 책임	제3항 : 모든 란스팅은 자신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항 : 란스팅은 주민의 욕구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이러한 기획은 민간제공자와 기타 보건의료제공자에 의해서 제시된 보건의료서비스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8항 : 란스팅공공기관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기획과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김철주(2016), 1969년 스웨덴 헌법 개정이후 의료체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유권헌법연구

3. 코문의 주요 행정사무

< 표 5 > 코문의 주요 행정 사무

분류	종류	내용
역할	서비스제공자	코문은 돌봄, 사회서비스, 교육, 인프라에 주요 제공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개발자	코문은 주거, 인프라, 지역사회의 주요 개발자이다.
	감독	코문은 수질오염이나 식품에 등급의 점검하는 등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주	코문은 공공섹터의 주요 행위자이자 노동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인력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주요 고용주이다.
주요 책임 (법적책임)	학령전 보육과 교육	
	초중등 교육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회 서비스	

분류	종류	내용
	상하수도	
	인프라, 교통, 대중교통	
	기획 및 환경	
	구조 및 응급서비스 (Rescue services and emergency preparedness)	
기타 (임의책임)	문화와 여가서비스	
	주거서비스	
	산업 및 상업 서비스	

출처 : <https://skl.se/tjanster/englishpages/municipalitiescountycouncilsandregions/theroleofthecountycouncilsandtheregions.1303.html> (2018.7.7 최종방문)

코문은 스웨덴 지역정부로 총 290개로 구성되어 있다. 코문은 자신의 주민들에게 지역세를 거두어 들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코문의 자치권이라고 한다. 코문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스웨덴 헌법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정치체계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코문은 지역마다 규모가 다르지만 이들은 공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정부법, 사회서비스법, 학교법, 기획과 건축법에 근거 하에 다양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⁴⁸⁾.

스웨덴 사회서비스 법은 코문이 자신의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면서 코문의 사회서비스는 의무이다.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는 코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약물 및 알콜 중독자, 노인, 장애인, 친척을 돌보는 사람, 범죄 희생자들은 특히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법하에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자유선택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48)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weden(2014), National Social Report 2014 - Sweden

이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환경에 적합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들은 여기에 적합한 훈련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코문은 주민들의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법과 기타 법에 의해서 관리되며 코문의 다양한 위원회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코문의회(kommunfullmäktige)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사회서비스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아동 보호 및 청소년 위원회가 있으며, 노인돌봄 관련해서 요양 위원회, 사회복지 이사회 등이 있다⁴⁹⁾.

위원회는 정치적 집단으로 코문의 전문 영역 내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영역은 역할별로 학교, 아동보호,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환경, 여가 문화 등이 있다. 위원회의 정치인들은 시간제 정치인으로서 근무하며 이는 이들이 본연의 직업이 있거나 학업중이라는 것이다. 각 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돈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양은 코문의 예산에 따라 다르다. 각 위원회는 행정부서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들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곳이다. 코문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문적인 사안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⁵⁰⁾.

아동보호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의 집합적 명칭이다. 유치원, 가족 탁아, 방과 후 교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맞벌이거나 학업중인 부모는 아동을 자신의 지역의 유치원에 맡길 권리가 주어진다. 유치원은 1살에서 5살이다⁵¹⁾.

49) Swedish Social Service Act

50) <https://www.informationsverige.se/Engelska/Samhalle/Samhallsorientering/Pages/S%C3%A5-fungerar-din-kommun.aspx> (2018.09.27. 최종 방문)

51) <https://www.informationsverige.se/Engelska/Samhalle/Samhallsorientering/Pages/S%C3%A5-fungerar-din-kommun.aspx> (2018.09.27. 최종 방문)

의무교육은 만 6세에서 16세의 아동에게 해당된다. 여기에 민간 사립학교 같은 독립학교도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낸다면 학비를 지불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우처 형식을 통해 아동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만 6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 예비학교에 진학하며 7세가 되면 학교에 입학한다. 의무학교는 무료교육이다⁵²⁾.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스웨덴 법은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의 중심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 생활할 수 있도록 코문에서 제공한다. 이용비는 코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코문이 지불하고 있다.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저하되었을 때 시설에 입소한다. 시설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음식이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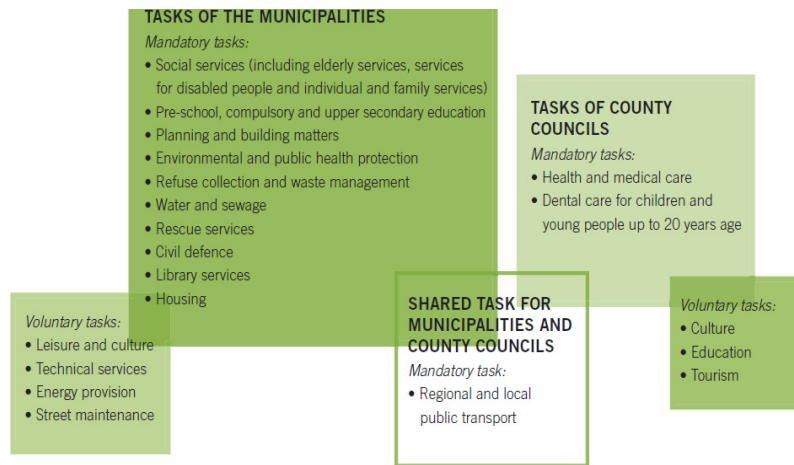
사회서비스는 일명 아동보호서비스로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함께 살면서 자녀를 돌본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주요 책임은 코문의 사회서비스로 넘어간다. 사회서비스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과 가족들을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제공한다. 현금과 같은 물질적 지원도 포함된다. 거주할 곳이 없거나 약물 남용문제, 협박이나 폭력 등 도 사회서비스 영역에 포함된다. 사회서비스의 도움은 상담, 부모교육,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아동이 집에서 학대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에서는 아동과 부모를 분리시킨다. 담당부소는 사회복지 사무소로 이들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도움, 중독문제, 직업과 학업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재정원조가 있다. 재정원조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제공된다.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

52) <https://www.informationsverige.se/Engelska/Samhalle/Samhallsorientering/Pages/S%C3%A5-fungerar-din-kommun.aspx> (2018.09.27. 최종 방문)

53) <https://www.informationsverige.se/Engelska/Samhalle/Samhallsorientering/Pages/S%C3%A5-fungerar-din-kommun.aspx> (2018.09.27. 최종 방문)

원조가 이루어지지만 조건부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사회서비스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⁵⁴⁾

중요한 점은 사회서비스를 제외하고 사회 돌봄과 교육은 제공기관과 재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제 3자 지불체제라고 한다. 1980년대 자유선택의 모델을 선택하여 스웨덴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양화시켰다. 따라서 교육이나 사회 돌봄 서비스의 재정지원자는 코뮌이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과 공공 기관들로 다양화되어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책임은 코뮌이 담당한다. 아동 보육의 경우 부모는 자녀를 위해 원하는 보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기관이 아니라 코뮌이다. 코뮌은 제공기관과 연결시켜주고 아동보육료를 지불한다. 장기요양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이 자신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신청에서부터 재정지원 등은 코뮌이 주요책임자이다⁵⁵⁾.



출처: Swedish Government(2005), Local government in Sweden - organisation, activities and finance, Ministry of Finance. p. 10/ <https://www.vannas.se/default.aspx?di=2056> (최종방문, 2018.7.7)

54) <https://www.informationsverige.se/Engelska/Samhalle/Samhallsorientering/Pages/S%C3%A5-fungerar-din-kommun.aspx> (2018.09.27. 최종 방문)

55) 박승희 외(2007), 스웨덴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제1절 스웨덴 헌법상의 지방자치
- 제2절 스웨덴 지방자치법의 구조
- 제3절 2017년 코문법의 주요내용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제1절 스웨덴 헌법상의 지방자치

1. 스웨덴 헌법의 구조⁵⁶⁾

(1) 도입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스웨덴 헌법은 다음과 같은 4개의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조직법(스웨덴어: Regeringsformen, RF) - 1974년 제정
- 왕위계승법(스웨덴어: Successionsordningen, SO) - 1810년 제정, 1979년 수정
- 언론자유법(스웨덴어: Tryckfrihetsförordningen, TF) - 1949년 제정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스웨덴어: Ytrandefrihetsgrundlagen, YFL) - 1991년 제정

비록 헌법을 구성하는 4대 기본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의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의회법(Riksdag Act)도 헌법에 준하는 주요 법률로서 헌법과 일반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56) <http://www.government.se/49b75a/contentassets/7b69df55e58147638f19bfdfb0984f97/the-constitution-of-sweden>

(2) 정부형태의 기본원칙(The basic principles of the form of government)

정부조직법 제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스웨덴의 모든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스웨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과 보통 평등 선거에 기초한다. 이것은 대의적이고 의회형식의 정부와 지방자치정부(local self-government)를 통해 실현된다. 공권력은 법률에 의해 행사된다”

스웨덴은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조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Regeringsformen)	제1장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	제 7 조 스웨덴에는 <u>지방 및 지역 자치단체</u> 가 있다. 제 8 조 사법기관으로 법원이 존재하고, 공공행정기관으로 중앙 및 <u>지방 정부</u> 의 행정기관이 존재한다.
	제7장 정부의 직무	제 2 조(업무준비) 정부 업무 준비 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은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얻는다. 필요시 <u>지방당국</u> 으로부터 정보 및 의견을 획득하고, 필요 시 단체와 개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 7 조 법령, 의회에 대한 제안, 기타 정부 결정은 수상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다른 각료가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정부는 특정한 경우에 공무원이 정부 결정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을 <u>조례</u> 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법률과 기타 규정	제 1 조 규정은 의회의 법률 및 정부의 <u>조례</u> 에 의하여 채택된다. 의회 또는 정부는 정부 및 <u>자치단체</u> 이외의 기관

		<p>이 규정을 채택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규정 채택의 위임은 법률 또는 <u>조례</u>에서 정하여야 한다.</p> <p>제 2 조(법률에 의해 채택된 규정) 다음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채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지위 또는 개인 상호 간의 사적, 경제적 관계 2. 개인의 의무와 관련되거나 개인의 신체적·경제적 상황을 침해하는 개인과 공공기관의 관계 3. <u>자치단체의 조직 및 지방세의 업무처리 절차, 기타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u> 4.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로서 스웨덴정교의 기초가 되는 원리 5. 영토 내의 상의적 국민투표 및 기본법에 관한 국민투표 절차; 및 6. 유럽의회 선거 또한 일정한 내용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채택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및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p>제 9 조(의회 및 정부 이외의 기구가 채택한 규정) 의회는 다음 사항의 경우 자치단체로 하여금 제2조 첫째 문단 제2호에 따른 규정을 채택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담금 ; 또는 2. <u>자치단체의</u> 교통조건을 규제하기 위한 세금. <p>제10조 의회가 이 장에 따라 정부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의회는 정부가 그 사안에 대한 규정제정권을 행정기관 또는 <u>자치단체</u>에 위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9조(규정의 공포 및 공표) 정부는 채택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p>
--	--	--

		의회 또는 의회산하기관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기본법 또는 의회법에 통합되지 않은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은 의회가 공포할 수 있다. 법률은 지체 없이 간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u>조례</u> 에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장 행정부	<p>제 2 조(국가행정부의 독립)</p> <p>의회와 <u>지방의 의사 결정 기관</u>을 포함한 어느 기관도 개인이나 <u>자치단체</u>에 대한 공권력 행사 또는 법률적용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서 행정기관의 결정 방식에 간섭할 수 없다.</p> <p>제 4 조(행정기능의 위임)</p> <p>행정기능은 <u>자치단체</u>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기능은 기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적 권한의 행사에 관한 기능의 경우에는 법률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다.</p> <p>제 6 조</p> <p>스웨덴 국민에 한하여 의회 옴부즈맨 또는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대법원장도 같다. 국가 또는 <u>자치단체</u>에 의한 공직 또는 임명 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웨덴 국적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 8 조(적용면제 및 사면)</p> <p>정부는 <u>조례</u>의 적용 또는 정부결정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예산지출승인에 관한 결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제14장 자치단체	<p>제 1 조</p> <p>스웨덴은 시 및 주 평의회를 둔다. 이들 <u>자치단체</u>의 의사결정권은 선출된 의회가 행사한다.</p>

		<p>제 2 조 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지방 및 지역적 사안을 담당한다. 이에 관한 상세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p> <p>제 3 조 지방자치에 대한 제한은 그 제한의 목적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 4 조 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 5 조 자치단체는 평등한 재정기반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출연할 의무를 질 수 있다.</p> <p>제 6 조 국가의 일부를 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근거는 법률로 정한다.</p>
	<p>제15장 전쟁 및 전쟁 위험</p>	<p>제 6 조 국가가 전쟁 중이거나 전쟁 위험에 노출된 경우 또는 그로 인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법적 권한에 따라 평상시에는 기본법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할 특정 문제에 대한 규정을 명령으로 채택할 수 있다. 국토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는 법적 권한으로 징발이나 기타 해당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이나 적용 중단 여부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은 그 권한을 원용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정하여야 한다. 그 권한으로 정부는 기본법, 의회법, 의회선거법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없다.</p>

		<p>제12조(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한) 국가가 전쟁 중이거나 전쟁 위협에 노출되면, 또는 그로 인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방기관의 의사결정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한다.</p>
<p><언론자유법></p>	<p>제2장 공문서의 공공성</p>	<p>제 5 조 이 장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권이 있는 의회와 지방의회는 공공기관과 동일시한다.</p> <p>제 7 조 문서는 발송되었을 때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발송되지 않은 문서는 관련 문제를 공공기관이 최종적으로 처리한 때, 또는 문서가 특정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승인하였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최종적인 형식을 수리한 경우 작성된 것으로 본다. 첫째 문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언급된 경우의 문서는 작성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일지, 장부, 계속하여 작성되는 기록부나 기타 목록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기하거나 기입할 준비가 되었을 때 2. 관련 법률에 따라 선고되거나 고지되는 법원 판결과 기타 결정, 그와 관련된 기록 또는 기타 문서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되거나 고지되었을 때; 또는 3. 공공기관이 보유한 그 밖의 기록이나 그에 상당하는 메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승인하였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최종적인 형식을 수리하였을 때 단, 의회위원회, 자치단체의 감사,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또는 결정 준비를 위해서만 관련 문제를 다루는 자치단체의 기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코문에 관한 입헌적 관점

원칙적으로 현재 운용되는 지방자치의 법적 형식은 1862년 이래 도입된 것이다. 코문(kommun)과 란스팅(lansting)은 자치를 통해 다양한 지역적 요구를 다루는 단위이다. 코문과 란스팅을 합해 ‘자치단체(kommuner)’라고 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지리적 범주와 더불어 법인과 개인을 아우르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에 대한 법적 요건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요건이 명기되어 있는 한 폐기될 수는 없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법인이므로 결과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의 경우에는 코문이 사기업이나 재산 소유자 등과 같이 사법(私法)에 의해 규제되는 법인으로서의 역할까지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문이 우선적으로는 공법(公法)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정부조직법(RF; Regeringsformen) 제14장 제4조에 명시된 코문의 조세권이라 하겠다. 아울러 코문법(KL) 제1장 제5조에 명시된 회원자격 요건 및 관할 영역의 범위, 코문법 제13장 제1조에 명시된 회원 관할 사법집행기관과 중앙정부 관할 사법집행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서도 코문의 공법적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는 사법(私法)에 의해 규제되는 단위와 코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의무적 조직 구성 등의 요소는 자유의사에 기반한 사법(私法) 부문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요소이다. 문학 작품에서도 이러한 코문의 법적 특성이 언급된 바 있다.(주석: 코문은 “여러 측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Warnling-Nerep. 1995)

EU의 법적 관점에서 보면 코문은 국가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Fratelli Costanzo v. Comune di Milano>사례(보충설명: European Court Reports 1989-01839, Case 103/88. 공공근로계약과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이 문제가 되어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에 영향을 준 사례)에서는, 자치단체는 국가적 행위의 일부로서 간주되어야 하므로, 지침(중앙정부의)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공공기관들의 사업에 대해 큰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논리적으로 국가는 법률 제정을 통해 제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각국의 범주 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나 개인과 관련해서 EU 법령을 위반하는 코문은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 순수하게 가정해 본다면, 스웨덴이라고 하는 국가가 코문이 활성화되는데 적합한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생각은 결코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며, 그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치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정부조직법 제1장 제1조 제2항은 코문의 자치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사회개혁정책의 도구임과 더불어 스웨덴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독립적이지만 자치의 자유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 코문의 자치행위는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사항과 종종 마찰을 일으킨다. 자치단체의 자치행위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는 때때로 불필요한 조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원칙은 자치단체 관련 법령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코문법의 전문에는 지방자치가 ‘절대 총합은 아니다(aldrig vara total)’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전문에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국회(riksdag)라고 적시되어 있다. 자율성의 정도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치행위에 관한 자연법(自然法)적인 견해는, 헌법에 대한 연구진척 정도와 다소간 관련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행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자치행위는 합법적 행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위협에 관한 논의는 종종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분히 처리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코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임무

때문에 지방자치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문법 제2장에 명시된 일반 역량규칙에 의해 규제되는 자치행위의 핵심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2010년의 개정을 통해 헌법(정부조직법)은 제14장에서 코문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거기에는 코문은 자치를 통해 지역 및 지방의 공적 이해를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코문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반 사항 역시 처리하게 된다.

헌법(정부조직법) 제14장 제3조에는 자치단체의 자치행위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그 조치가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필요성보다 더 포괄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비례의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는 자치단체의 자치행위를 제한조치 이전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치행위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제한조치 입법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전의 방법들보다는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론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지위와 자치행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제한입법의 합헌여부를 법제위원회(lagrådet)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지방자치의 사실상의(de facto) 강화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스웨덴 지방자치법의 구조

2017년 개정안은 2003년 법률에 3개의 장(11~13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2003년 법률 내용 중 2017년 개정안에서 제7장. 공동결정절차는 누락되었다. 이외에 2017년 개정안에 제7장 고용직, 제8장 참여와 투명성, 제9장 코문 간 협력, 제10장 코문 담당 사항 이전은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다. 2017년 개정안은 2003년 법률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관련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6 > 스웨덴 지방자치법

구분	2017년(스웨덴어)	2003년(영어)
	코문의 기초	분리와 구성원
제1장	제1조. 코문과 란스팅 제2조. 세금공제 및 조례 제정 권한 제3조. 지방의회와 의원 제4조. 코문의 구성원 제5조. 투표권 제6조. 코문과 란스팅 분리	제1조. 코문과 란스팅 등의 분리 제2조. 구성원(코문의)
	코문의 권한 영역	코문과 란스팅의 권한
제2장	제1조. 일반 권한과 지역 원칙 제2조. 코문의 권한 외 직무 제3조. 공평의 원칙 제4조. 소급결정 금지 제5조. 수수료 청구권 제6조. 적정가 원리 제7조. 특별 권한	제1조. 일반 권한 제2조. 사업 관련 특별 조항 제3조. 지방정부의 정당 지원
	코문과 란스팅의 조직 및 활동	코문과 란스팅의 조직 및 사업구조
제3장	제1조. 의원 제2조. 의원 총회 제3조. 이사회 및 위원회 제4조. 특별 위원회 제5조. 산하 기관 및 자치 기구 제6조. 코문 간 협의체 제7조. 일반 위원회 제8조. 회계 감사관 제9조. 코문 소유 기업, 재단 및 협회 제10조. 민간 사업자 제11조. 전시 조항 및 부대 사항 제12조. 지역위원 및 지역협의회	제1조. 의회 제2조. 위원회 제3조. 기초 위원회 제4조. 회계 감사관 제5조. 의회의 의무 제6조. 위원회의 의무 제7조. 코문 기업 제8조. 지방정부의 계약 제9조. 코문 협의체 제10조. 지방정부의 공문보관

구분	2017년(스웨덴어)	2003년(영어)
제4장	피선인(선출직)	선출직
	제1조. 피선인의 정의 제2조. 코문과 란스팅 위원회 제3조. 자격 제4조. 임무 제5조. 궐석 제6조. 발안 제7조. 대리 제8조. 장애인 선출 제9조. 투표와 결의 제10조. 후보 제11조. 출석권 제12조. 정당지원 제13조. 정책 비서관	제1조. 정의 제2조. 투표권(선출직을 뽑는) 제3조. 피선 자격 제4조. 임기 제5조. 재정 지원 제6조. 권리 제7조. 투표와 결정(선출직에 의한) 제8조. 소수의견 제9조. 출석권 제10조. 코문 협의체 관련 특별조항 제11조. 스톡홀름 코문의 커미셔너 제12조. 정책 비서관 제13조. 장애인
제5장	지방의회	의회
	제1조. 의회의 의무 제2조. 의원 및 대리인 수 제3조. 일반 선거 제4조. 특별 선거 제5조. 의장과 부의장 제6조. 회기 제7조. 회기 공시 제8조. 출석 공고 제9조. 원격 출석 제10조. 대리인 제11조. 의원 관련 사안 제12조. 면책 및 소명 제13조. 입안 제14조. 비 의원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의원 총회의 공개와 순서 제16조. 의제 공고 제17조. 의결	제1조. 의원과 대리인의 수 제2조. 임기 제3조. 의장과 부의장 제4조. 회기 제5조. 회의 공시 제6조. 대리인 제7조. 정족수 제8조. 자격상실 제9조. 결석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안건 제기 제11조. 면책 심의 제12조. 사업 준비 제13조. 재심 상정 및 환송 제14조. 회의 공시와 절차 제15조. 의결 절차 제16조. 비례대표 제17조. 질의

구분	2017년(스웨덴어)	2003년(영어)
	제18조. 자격상실 제19조. 정회와 재개 제20조. 의결 절차 제21조. 비례 대표 제22조. 청원 제23조. 질의 제24조. 프로토콜 제25조. 규정	제18조. 회의록 제19조. 규정
제6장	행정위원회와 기타위원회	행정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제1조. 임무 제2조. 행정위원회의 특별 임무 제3조. 행정위원회 이사 및 대리인 제4조. 임기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6조. 회의 공시 제7조. 원격 출석 제8조. 회의 공개와 출석 제9조. 의결 제10조. 자격 상실 제11조. 의결 절차 제12조. 프로토콜 제13조. 위임 제14조. 의결사항 위임 제15조. 의결사항 공고 제16조. 위원회 제17조. 위원 선정 제18조. 규정	제1조. 행정위원회(집행위원회)의 의무 제2조. 활동위원회의 책무 제3조. 위원과 대리인의 수 제4조. 임기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6조. 회기 제7조. 비 위원의 권리 제8조. 특별 위원회와 기초 위원회 제9조. 정족수 제10조. 자격 상실 제11조. 의결 제12조. 회의록 제13조. 문서화 제14조. 의사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사업 위임
제7장	고용직	공동결정절차
	제1조. 감독자 제2조. 자격 제3조. 해임	제1조. 합동 기구 제2조. 회의참가자의 개인 권리 제3조. 독자 기구

구분	2017년(스웨덴어)	2003년(영어)
	제4조. 의결 사항 위임 제5조. 의결 사항 공고 제6조. 정보공개 의무 제7조. 직원 대표 제8조. 정당 소속 기구	
제8장	참여와 투명성	재무관리
	제1조. 시민 제2조. 시민 발의 제3조. 심의 제4조. 자치기구 구성 제5조. 게시 제6조. 회의록 공표 제7조. 코문 규정 제8조. 예산의 투명성 제9조. 연례 보고서의 투명성 제10조. 민간 참여자의 투명성 제11조. 개인정보	제1조. 재무관리의 목표 제2조. 자금 관리 제3조. 예산 항목 제4조. 예산편성 과정 제5조. 회계연도의 지출 결정 제6조. 담보 금지 제7조. 부기 및 회계 제8조. 코문 협의체 관련 특별 조항
제9장	코문 간 협력	감사
	제1조. 코문 협의체 제1항. 코문 협의체 구성 제2항. 코문 협의체 관련 조항 제3항. 협의회, 협회 및 기타 기구 제4항. 절차 제5항. 구성원 및 대리인 제6항. 비례 대표 제7항. 예산 편성 제8항. 참가자의 경제적 책임 소재 제9항. 회계 감사관 제10항. 주민투표 제11항. 게시 제12항. 탈퇴	제1조. 회계 감사관과 대리인 선임 제2조. 자격 상실 제3조. 회계 감사관의 지위 제4조. 전문가 자문 제5조. 회계 감사관의 의무 제6조. 회계 감사관의 관리 제7조. 감사 보고서 제8조. 감사 규정 제9조. 코문 협의체 관련 특별 조항

구분	2017년(스웨덴어)	2003년(영어)
	제2조. 공동위원회 제13항. 발족 제14항. 임무 제15항. 공동위원회 관련 조항 제16항. 구성원 및 대리인 제17항. 경비 지급 제18항. 예산 제19항. 정보 청구권 제20항. 직원 대표자 참여 제21항. 청원과 질의 제22항. 의결 사항 위임 제23항. 회의록 공표 제24항. 규정 제25항. 회계 감사관 제26항. 면책 및 소명 제27항. 보육 분야 공동위원회	
제10장	코문 담당 사항 이전	적법성 평가
	제1조. 양도 제2조. 코문 기업 제1항. 정의 제2항. 전액출자 기업 제3항. 공동출자 기업 제4항. 회계 감사관 제3조. 코문 재단 및 협회 제4조. 민간 사업자	제1조. 범위 제2조. 심판 청구 제3조. 청구 기한 제4조. 적법성 평가의 기준 제5조. 청구 절차 제6조. 집행 요구 제7조. 시행
제11장	재무 관리	
	제1조. 재무 관리의 목표 제2조. 자금 관리 제3조. 예산 항목 제4조. 예산 편성 제5조. 대차대조표 조정	

구분	2017년(스웨덴어)	2003년(영어)
	제6조. 균형예산 보유 제7조. 회계 연도 중 지출 결의 제8조. 중간보고 제9조. 계정 제10조. 연례 보고서 제11조. 담보권 설정 금지 제12조. 세율 고시 제13조. 규정	
제12장	감사	
	제1조. 회계 감사관의 임무 제2조. 회계 감사관의 선임 제3조. 회계 감사관의 지위 제4조. 전문가의 자문 제5조. 회계 감사관의 정보 청구권 제6조. 회계 감사관의 관리 제7조. 감사 보고서 제8조. 자격 상실 제9조. 감사 규정	
제13장	적법성	
	제1조. 심판 청구인 제2조. 심판 청구 대상 제3조. 심판 과정 제4조. 심판 기간 제5조. 결정 취소 근거 제6조. 재판 절차 제7조. 판결 제8조. 결과의 수용 시행	

제3절 2017년 코문법의 주요내용(Kommunallag)

1. 코문의 기초

스웨덴은 코문(kommun)과 란스팅(landsting)으로 나뉜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각 란스팅은 한 개의 랜(län; 州)에 해당한다(제1장 제1조). 코문과 란스팅은 코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관장함에 있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제1장 제2조). 코문과 란스팅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고 헌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1장 제3조). 코문과 란스팅의 의결권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또한 의사결정은 코문법과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자치 기구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제1장 제4조). 코문의 구성원은 코문에 인구등록이 된 자, 코문 내에 재산을 소유한 자, 지방세 납세 의무를 지닌 자로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지니고 코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들은 주민등록법(1991:481)에 의거하여 인구등록을 할 수 없다(제1장 제5조). 란스팅의 구성원은 해당 란스팅을 구성하는 각 코문의 구성원으로 한다(제1장 제6조).

코문 의원과 대리인 선출 투표권은 코문에 인구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 당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서, 스웨덴 국적이거나 유럽연합 시민권을 가진 자,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자, 선거 전일까지 3년 연속으로 스웨덴에서의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투표권은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지니고 코문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여한다(제1장 제7조). 란스팅 의원과 대리인 선출 투표권은 코문 의원과 대리인 선출 투표권을 가진 자에게 부여한다(제1장 제8조). 구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스웨덴에서의 코문과 란스팅 분리에 관한 법령(1979:411)에 의거한다(제1장 제10조).

2. 코문의 관할영역

코문과 란스팅은 해당 지역 및 구성원의 일반 관심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2장 제1조). 코문과 란스팅은 중앙정부, 타 코문, 타 란스팅만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 또는 타 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제2장 제2조). 코문과 란스팅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구성원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만 한다(제2장 제3조). 코문과 란스팅은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소급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급결정을 취할 수 있다(제2장 제4조). 코문과 란스팅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재화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을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제2장 제5조). 코문과 란스팅은 제공한 서비스나 재화의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2장 제6조). 코문과 란스팅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구성원을 위한 공중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제2장 제7조). 코문과 란스팅은 코문과 란스팅 내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별도 지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제2장 제8조). 코문과 란스팅의 직무에 관한 조항은 지자체의 권한에 관한 법령(2009:47) 및 기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제2장 제9조).

3. 코문과 란스팅의 조직 및 활동

각 코문과 란스팅에는 의결기구로서 의원총회를 둔다(제3장 제1조). 의원총회는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특별 안건이나 기타 집단 안건에 대비한 의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3장 제2조). 총회에서는 이사회를 임명한다(제3장 제3조). 총회에서는 이사회 외에도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코문과 란스팅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제3장 제4조). 총회는 개별 위원회가 복수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총회에서 위원회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별 위원회는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제3장 제5조). 코문과 란스팅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준비와 실행을 담당할 산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제3장 제6조). 코문과 란스팅은 이사회가 관할하는 특정 시설 및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이의 전반적 혹은 부분적 관리를 담당하는 자치 기구의 설립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제3장 제7조). 코문과 란스팅은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해당 자치단체 관련 직무를 지방정부에 양도할 수 있다(제3장 제8조). 코문과 란스팅은 이사회가 여타 코문 또는 란스팅과의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3장 제9조). 코문과 란스팅은 자치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 감사관을 임명해야 한다(제3장 제10조). 코문과 란스팅은 법률에 의한 제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할 사항을 코문 기업, 재단 및 협회에 양도할 수 있다(제3장 제11조). 코문과 란스팅은 법률에 의한 제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할 사항을 민간 행위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3장 제12조). 전쟁이나 전쟁 위기 시 코문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전쟁 및 위기 상황 시 자치단체, 행정 및 사법기구의 절차에 관한 법률(1988: 97)에 준한다. 평시 중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코문과 란스팅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조항은, 평시와 준비강화 시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코문과 란스팅의 활동에 관해 다른 법률(2006: 544)에 준한다(제3장 제13조). 고틀란드(Gotland) 코문 등 일부 지자체의 의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일부 지자체에서의 지역 의회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해 다른 지역개발책임법(2010: 630)에 준한다(제3장 제14조).

4. 피선인(선출직)

피선(대표)인은 총회, 위원회, 의회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과 대체의원을 의미하며, 신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피선인에는 또한 조정 회의, 자치정부 이사회, 기타 위원회의 구성원 및 코문 협회의 회계 감사관도 포함된다(제4장 제1조). 코문과 란스팅 위원회에서 전일 근무를 하거나 전일 근무에 해당하는 직무에서 중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자는 코문 위원회, 시민 위원회, 란스팅 위원회, 또는 반대 단체의 위원회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별도의 기구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선출권은 전국 단위의 총

선거를 실시한 뒤 가장 먼저 개최하는 의원총회에서 다룬다(제4장 제2조). 의원총회의 의원과 대체 의원은 앞에 언급된 투표권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 위원 선거는, 선거 조항에 명시된 사항과 관계없이 앞에 언급된 조건이 선거 시점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은 의회 위원회와 회계 감사관 선출에 관해 명시된 특별한 대의원 선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4장 제3조). 의원총회의 의원 및 대체 의원은 코문과 란스팅에서의 감사관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코문과 란스팅에 보고 책임이 있는 자는 보고 의무가 있는 직무에 대한 감사관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상기 요건은 감사인의 배우자, 동거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4장 제4조). 코문과 란스팅에서 감사관으로 선출된 자는, 의원총회의 의원이나 대체 의원, 이사회 의 위원 기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제4장 제5조).

피선인이 사임을 요구할 때, 의원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수락해야 한다(제4장 제6조).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할 시, 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의원총회에서의 선출에 의한 사안인 경우, 만일 의원총회가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종료된다(제4장 제7조). 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만료된다. 의원 총회가 해산되고 재선거가 열릴 경우, 정당한 의석수의 변동이 있거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의원 총회와 관련된 추가 선거가 진행될 경우이다. 재선, 조정 또는 추가 선거가 완료되면, 의원 총회는 남은 임기를 담당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기존 대표자의 임기는 재선, 조정 또는 추가 선거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만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는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조기에 새롭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대표자의 임기는 동시에 만료되어야 한다(제4장 제8조). 의원 총회에서는 선출된 대표자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을 거부할 수 있다. 퇴임을 거부할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해 2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적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 의원 총회에서는 제2조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위원회 및 각급 단위에서의 선출직 대표와 관련된 할당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의 정치적 다수파가 의원 총회에서의 경우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위원 및 대체 위원에 대한 투표가 시행되거나 새로운 실무 조직이 제안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임기는 만료된다(제4장 제10조).

피선인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식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식 시간은 다음과 같은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코문 기구에서의 회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타 회의, 회의와 관련된 출장, 회의를 전후한 매일의 최소 휴식 시간. 이러한 권리는 제10장 제2조~제6조에 언급되는 이사회 구성원, 대리인, 각급 회계 감사관 및 법인체의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제4장 제11조). 피선인은 직무 수행 시 발생하게 되는 소득 및 재정적 이익의 손실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4장 제12조). 장애인 선출 대표자는 직무 수행 시 소요되는 여행 경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4장 제13조).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두고 있는 피선인은 자신의 직무 수행 당시에 발행하게 되는 아동 보살핌 비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4장 제14조). 의원 총회는 제12조~제14조에 따라 보수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제4장 제15조). 의원 총회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선인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수령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와 제14조와 관련하여 여행 경비 및 직무 수행 시 발생한 기타 비용에 대한 보상,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수수료, 연금, 기타 금융 혜택. 의원 총회가 수수료 지불을 결의하면, 동일한 직무에는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가 지불되어야만 한다(제4장 제16조).

의원 총회는 2조에 명시된 각급 단위의 피선인이 코문과 란스팅에 의해 고용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 및 고용 조건을 비롯한 재정 및 기타 혜택을 얻기 위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 총회는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바의 결과로 휴가를 부여받은 피선 대표자를 대체하는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제4장 제16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관련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제4장 제20조). 각 회계 감사관은 각 위원회 또는 의회 위원회의 직무 검증에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 각 위원회 또는 의회 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제4장 제21조). 대체 의원의 경우에도 일반 의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제4장 제22조). 코문과 란스팅은 장애인 대표가 다른 피선 대표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직무 참

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장 제23조). 의원 총회 및 각 위원회의 참석자는 각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제4장 제24조). 의원 총회 또는 각 위원회의 참석자는 투표 또는 결의 과정에서 기권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은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제4장 제25조). 특정 사안이 어느 개인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결의 과정에 참석해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안건에까지 투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제4장 제26조).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에 참가한 자는 결정 사항에 대해 유보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회의 종료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제4장 제27조). 의원 총회는 특정 이사회의 위원이나 대체 위원이 심의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결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참석자가 자신의 견해를 의사록에 기록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제4장 제28조).

코문과 란스팅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정당 지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에 재정 지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당 지원은 의원 총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법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각 정당은 법률(2005:837) 제14장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의원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대의된다. 정당 지원은 의원 총회에 대표자가 없는 정당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석 상실 후 1년 동안만 가능하다(제4장 제29조). 의원 총회는 정당 지원의 범위와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총회는 정당 지원 분배 시 고려해야만 하는 법률(2005:837) 제14장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해야 한다(제4장 제30조). 정당 지원에 대한 결정에는 해당 지원의 수령자가 제29조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바의 목적을 위해 정당 지원금을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 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의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원 수령인이 임명한 특별 검수자는 수령인에 의해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 해당 검수자의 검토 보고서 역시 본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의원 총회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바에 따라, 회계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에게는 지원금을 중단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4장 제31조). 정당 지원금 지급 결정은 최소 1년에 한 번 의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제4장 제32조). 코문과 란스팅은 정치 분야 업무와 관련해 선출직 대표자를 보조하기 위한 정책 비서관을 고용할 수 있다(제4장 제33조). 정책 비서관은 전국 단위의 차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연말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고용보호법(1982:80) 조항은 정책 비서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책 비서관은 직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4장 제34조).

5. 지방의회(의원)

의회는 코문과 란스팅의 원칙이나 중대 사안을 결정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목표 및 운영 지침, 예산, 조세 및 기타 주요 경제 문제, 조직 및 사업, 이사회 및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 위원 선출, 회계 감사관 임명, 피선인에 대한 경제적 혜택의 기본 사항, 연례 보고서 발간, 코문과 란스팅에서의 주민투표, 의회 추가 선거. 의회는 또한 본 법령 및 기타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안에 대해 결정한다(제5장 제1조). 의회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들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조 제1항에 관한 사안이나 기타 본 법령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은 이사회에 위임하지 않아야 한다(제5장 제2조). 의회는 민간인이 수행하는 코문 관련 업무에 대한 목표 및 지침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문의 목표와 지침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과 공적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제5장 제3조). 예산안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할당될 경우, 본 법령이나 기타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한 의회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범위와 지침 내에서 특정 사업을 수행할 위원회 구성을 승인해야 한다(제5장 제4조). 의회는 의원 정수를 결정한다. 의원 정수는 홀수로 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권자 수	의원 정수
i. 8,000 미만의 코문	21인
i. 8,000 이상의 코문/ ii. 140,000 미만의 란스팅	31인
i. 16,000 이상의 코문	41인
i. 24,000 이상의 코문/ ii. 140,000 이상의 란스팅	51인
i. 36,000 이상의 코문	61인
i. 200,000 이상의 란스팅	71인
i. 600,000 이상의 코문/ ii. 300,000 이상의 란스팅	101인

제5조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해, 유효 유권자 수는 선거 전년도 3월 1일까지의 공적 세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률(2001:182)에 따라 국가 인구등록 데이터에 기초해서 산정한다(제5장 제6조). 의회 정족수가 결정되면, 이 결정사항은 차기 전국 총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결정은 2월 말까지 취해야 한다. 이 결정사항은 즉시 지방행정당국에 공지해야 한다(제5장 제7조). 대체 의원을 둘 수 있다. 의회는 대체 의원 총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 수는 각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에 비례하지만, 의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결정은 2월 말까지 취해야 한다. 이 결정사항은 즉시 지방행정당국에 공지해야 한다(제5장 제8조).

선출된 의회 의원 및 대체 의원은 선거 년도 10월 15일부터 4년 동안 대의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2005:837)제14장 제27조에 따라 재선거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재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제5장 제9조).

의회는 차기 일반 선거가 있기 전이라도 의회에 대한 추가 선거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 선거는 의원 정수의 2/3이상이 찬성한 경우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 선거는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제1차 의원총회 개최로부터 6개월 내에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제5장 제10조). 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원총회의 의장단을 구성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회는 의장단의 임기를 결정한다(제5장 제11조). 의회는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결정한다. 이사회나 의원의 1/3이상이 요청한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회의가 열릴 수 있다(제5장 제12조). 의장은 각 회의에 관한 시간과 장소를 의회에 공표하고, 당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일 최소 1주 전에는 코문이나 란스팅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한다(제5장 제13조). 제13조에 따른 공시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 사안인 경우라도, 이에 대한 내용은 회의 개최일 최소 1일 전에는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한다(제5장 제14조).

각 의원 및 대체 의원은 회의 개최 최소 1주일 전에는 공고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공고에는 회의의 시간과 장소, 심의 안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각 의원 및 대체 의원이 회의 개최 최소 1일 전까지는 회기 공시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배부되어야 한다(제5장 제15조). 의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원격지에 있는 의원도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 참여는 실시간 음성 및 영상 전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회의 참석자가 서로를 보고 서로 공평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 출석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장 제16조).

의원이 회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회의 중 궐석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해당 의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제5장 제17조). 대체 의원은 대체 의원들 내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일단 회의에 참석한 대체 의원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회의 참여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특정 사안의 부결로 회의 참여가 무산된 대체 의원은 해당 사안이 처리된 이후에 다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제5장 제18조). 진행 중인 회의나 추가 회의 중에 사임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대체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제5장 제19조). 돌발 상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회의를 파행시킨 의원은 당일 해당 회의에는 더 이상 참석할 수 없다(제5장 제20조). 코문 의회 내에서 대체 의원은 동일 선거구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의회 내의 모든 대체 의원들이 회의 출석이나 회의의 지속적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특정 순서에 따라, 법률상 각 정당의 최우선 지위를 가진 선거구 순으로 의원 대리가 가능하다. 해당 대체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정당의 차석 지위를 가진

선거구에서 의원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 특정 정당 소속의 모든 의원이 회의 출석이나 회의의 지속적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이유에 따라, 다른 선거구의 같은 정당 의원으로 대체될 수 있다. 각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상 번호가 가장 앞선 정당 소속의 대체 의원이 우선순위를 가진다(제5장 제21조).

의원 총회의 안건은 의원, 실행 위원, 회계에 관련된 안건이거나 감사 임무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회계 감사관, 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경우, 특정 의회위원회, 의원 총회에서 특별 안건으로 인정한 경우, 제10장 제2조~제6조에 언급된 법인 이사회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총회에서의 안건은 제8장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시민과 공공 기구를 통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제5장 제22조). 의원 총회는 제22조에서 언급된 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의원 총회는 제1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이 제안한 안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로의 이관을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23조).

의원 총회는 회계연도의 익년 6월말 이전에, 면책을 허용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명백히 불필요할 경우 그 결정은 이를 반영해야만 한다. 제12장 제13조에 따라 회계 감사관이 위원회나 의원 총회, 혹은 의원 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의원 총회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계 감사관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의원 총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은 조정될 수 있다(제5장 제24조). 면책이 거부될 경우, 의원 총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의원 총회에 의해 위임이 철회되는 경우에 관련된 조항은 제4장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제5장 제25조).

의원 총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안건에 관련된 각 위원회나 의회위원회는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제5장 제26조). 안건 준비가 의회위원회에서만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기회를 갖는다(제5장 제27조).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나 의회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기회를 항상 갖는다.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나 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의 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5장 제28조). 의원 총회는 사전 협의 없이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의무선택으로서 임기 만료와 관련된 경우에도 사전 협의의 필요는 없다(제5장 제29조). 새롭게 구성된 의원 총회가 사전 협의 없이 위원회의 임기나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 위원의 수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전국 단위의 총선거가 실시된다(제5장 제30조). 의원 총회는 사전 협의 없이도 의회에 대한 추가 선거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31조). 의원 총회는 사전 협의 없이 감사 보고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총회는 감사 보고서의 첫 항목과 면책조항은 승인되지 않았다는 감사관의 진술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회계 감사관과 자문위원은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원 총회의 심의과정에서 항상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위임자로서의 면책을 거부할 경우, 의원 총회는 제4장 제9조에 의해 추가 심사 없이도 회계 감사관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제5장 제32조). 출석한 모든 의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특정 안건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긴급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5장 제33조). 시민에 의해 제기된 안건은 사전 협의 없이도, 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제23조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사회 또는 다른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제5장 제34조).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시민 제안 건은 가능하면, 동의 여부 또는 시민 제안의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이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 이르는 시간과 동일한 기한 내에 의원 총회에 해당 내용이 공지되어야 한다. 의원 총회는 추후 처리를 통해 안건 동의안이나 시민 제안을 폐기할 수 있다(제5장 제35조). 의원 총회는 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 준비의 일환으로,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주민투표, 여론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준해 실시될 수 있다. 여론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코뮌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경우, 의원 총회는 선거법(2005:837) 제5장에 따라 선거 및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함을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36조).

제8장 제2조에 의해 시민 제안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원 총회는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야만 하는 제안에 관련된 경우, 해당 제안에 대해 출석 의원의 2/3 미만이 반대한 경우에

주민투표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37조). 코문은 란스텝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제5장 제38조).

제4장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도 의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심의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의결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제5장 제39조). 의회는 의원 이외의 사람이나 제39조에 언급된 자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40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코문과 란스텝의 회계 감사관 및 직원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어나 기밀유지가 보장된 경우라면, 의회 회의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제5장 제41조).

의회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한다. 그러나 의원 총회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함을 결정할 수 있다. 대리인(대체 의원)은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상기한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제5장 제42조). 의장은 의원 총회를 주재하며, 총회 준비의 책임을 가진다. 의장은 항 의장은 총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서의 준비를 담당한다. 의장은 선임 이후라도 정리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지목할 수 있다(제5장 제43조).

의원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총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회의는 공개로 진행함을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44조). 의원 총회는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의원 총회는 청원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진행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의거하여 안건 처리에 부적합한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45조에 명시된 정족수를 넘지 않더라도 의원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제5장 제46조).

의원은 자신, 배우자, 동거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기타 관련자와 관련된 사안의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의원에게는 제6장 제30조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의 조항을 적용한다. 금고형에 준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의원 총

회에서 다루고 제6장 제32조의 조항을 적용한다. 상기 조항에 관한 사안들은 의원 총회에서 다룬다(제5장 제47조). 코문이나 란스팅에 보고 책임이 있는 자는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의 감사를 위한 회계 감사관의 선출이나 사업의 면책을 다루는 사안의 처리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제5장 제48조). 상기 조항은 회계 감사관의 배우자, 동거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8조에 의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처리하는 의원 총회의 심의 과정에는 제12장 제13조에 의한 개별 선출직 자격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다루는 의원 총회의 심의 과정에 참석할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은 당사자가 의원 총회의 의원이 아닐지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5장 제49조).

출석 의원의 최소 1/3 이상이 동의한 경우, 안건은 상정 또는 재상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 집단의 요청에 의해 제기되거나 회부된 안건의 경우에는 단순 다수결로도 처리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안건이나 재선거의 경우에도 단순 다수결이 적용된다. 그러나 추가 선거에 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경우라면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재선거에 대한 요구의 사유는 이를 요구한 의원들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몇 가지 사유에 의해, 의장은 출석 의원의 최소 1/3 이상이 이 제안에 동의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제5장 제50조). 의원 총회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사회는 차기 의원 총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제5장 제51조).

의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발표된 안건에 대해서만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참석자가 동의한 사안인 경우에는 긴급 안건이라도 상정할 수 있다(제5장 제52조). 심의가 완료되면 의장은 결정사항에 대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문건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장은 투표가 요청되지 않는 한, 의장단과 함께 의결사항을 결정하고 확정하여 보고한다(제5장 제53조). 투표가 요청되었을 때, 직원의 선발과 고용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를 실시된다(제5장 제54조). 결과는 본 법령이나 기타 법률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단순다수결로 결정한다(제5장 제55

조). 투표권의 일치를 위해 의장도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직원의 선발이나 고용에 관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56조). 의장은 의결사항에 관한 보고서가 새로운 문제 제기를 수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의장은 의결사항에 관한 보고서나 본 법령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결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총회는 해당 의결보고서가 유효한 것임을 결의할 수 있다(제5장 제57조).

비례 대표 선출권에 관한 법률(1992:339) 제2조에 언급된 피선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직위의 선출에는 비례 대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사회 및 위원회의 위원 및 대리인 선출. 제12장 제4조와 제5조에서 언급한 회계 감사관 선출. 유한회사 이사회의 위원 및 대리인 선출. 경제 관련 단체나 재단 이사회의 위원 및 대리인 선출. 유한책임회사, 경제 관련 단체 및 재단의 관리감독을 담당할 회계 감사관, 대리 감사관 등의 선출. 제2조 제2항에 언급된 위원회 선거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출석 의원의 2/3가 정당의 정치적 요인 이외에 어떤 이유로든 이사회 이사를 선임토록 투표한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장 제58조).

청원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나 의원총회의 의장 및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대표에게 회부할 수 있다. 의회는 청원이 제4장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만 회부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59조). 청원은 명확한 내용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제5장 제61조). 청원은 의회, 위원회 및 의원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는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청원은 코문과 란스팅 차원에서 핵심 관심 사안인 경우에만 제기되어야 한다(제5장 제61조). 의원 총회는 사전협의 없이도 청원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제5장 제62조). 의원 총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10장 제2조~제6조에서 언급된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회가 임명한 자, 또는 코문이나 란스팅이 소속된 지방자치협의회의 기타 위원회나 행정당국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제5장 제63조).

의원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59조, 제61조 첫 번째 단락,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명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질의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질의를 제기한 자와 답변자만이 질의에 대한 숙의에 참여할 수 있다(제5장 제64조).

회의 진행시 회의록은 의장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제5장 제65조). 회의록에는 어떤 의원 및 대체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어떤 안건이 처리되었는지 명시되어야 한다(제5장 제66조). 회의록에는 어떤 제안과 주장이 제기되거나 첨부되었는가? 어떤 절차를 통해 의장이 의사결정과정을 이끌어 갔는가? 안건에 대한 표결과 결과, 의결사항은 무엇인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자는 누구이며, 표결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의사결정에 있어 보류사항은 무엇인가? 의 항목이 기술되어야 한다(제5장 제67조). 프로토콜에는 어떤 청원과 질의가 제기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제5장 제68조). 프로토콜은 의원 총회에서 비준회의 후 최소 14일 이전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제5장 제69조). 게시판에 공지될 회의록의 수정에 관한 항목은 제8장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제5장 제70조).

6. 이사회(행정위원회)와 기타 위원회

의원 총회는 기타 법령과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이사회와 의회화의 관련 범주를 결정해야 한다. 의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코문 또는 란스팅 전역에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업을 관장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코문 또는 란스팅 일부 지역에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업을 관장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공관을 두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직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6장 제2조). 위원회는 행정 관련 사항과 기타 관련 법령 및 법률에 의해 책임소재가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는 의원 총회에 위임할 사안을 결정한다(제6장 제3조). 위원회는 의회 업무를 준비하고 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할 책임을 가진다(제6장 제4조). 위원회는 의원 총회가 제5장 제2조~제4조에 따라 결정한 대로, 부여받

은 임무를 어떻게 완료하였는지를 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 총회는 감사 보고서의 범위와 양식을 결정해야 한다(제6장 제5조). 이사회는 의원 총회가 채택한 목표 및 지침과 관련한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 및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활동이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내부 관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직무가 만족스런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제10장 제1조에 언급된 다른 위원회에 위임한 코문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6장 제6조). 위원회는 위원회가 코문 또는 란스팅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되어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코문 또는 란스팅에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법률 또는 기타 공공관리 규정에 따라 위원회 자체 사업을 감독하여서는 안 된다(제6장 제7조).

의원 총회는 이사회가 다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특수 상황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의 실행사항, 개인에 관련된 법률 및 사례적용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제6장 제8조). 이사회는 제10장 제2조에 언급되는 개별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유한회사가 전년도에 수행한 사업이 기존 코문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고 코문의 권한 내에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해 연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사안이 이사회의 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원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제6장 제9조). 이사회는 각 유한회사가 제10장 제3조~제5조의 해당 조항에 언급된 사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장 제10조). 이사회는 코문 또는 지자체의 개발 및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의원 총회, 기타 위원회 및 기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진술을 해야 한다(제6장 제11조). 이사회는 코문 또는 란스팅 내의 다른 위원회와 직원에게 이사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견과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6장 제12조).

이사회의 특별 이행 사항
i. 의원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준비와 논평

(제5장 제29조~제33조에서 정한 조함에 따름)

- ii. 재무관리의 담당
- iii.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 iv. 의원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임무의 수행

의원 총회는 이사회가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의원 총회는 또한 이사회가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체 보도관리를 담당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6장 제14조). 이사회는 의원 총회의 결정이나 기타 법령 및 법률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은 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코문 또는 란스팅을 대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치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코문 또는 란스팅을 대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은 한,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6장 제15조).

위원회의 위원과 대체 위원의 수는 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수에 부합되도록 선출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위원과 대체 위원의 수는 최소 5인으로 한다. 대체 위원이 비례 대표되지 않았을 경우, 의원 총회는 대체 위원의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제6장 제16조). 의원 총회는 위원회에서의 대체 위원 임무를 결정해야 한다. 대체 위원은 회의와 관련한 시간과 장소를 공지 받아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않는 대체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의원 총회는 대체 위원들이 심의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와 대체 위원들의 발언을 어느 정도 회의록에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제6장 제17조).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 위원의 임기는 전국 단위의 총선거가 실시된 당해 1월 1일부터 4년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 총회는 첫 번째 의원 총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차기 이사회 선출에 따른 회의 개최 시까지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구성된 의회는 첫 번째 의원 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선임한다(제6장 제18조). 의원 총회는 이사회 이외의 위원회의 임기를 결정한다(제6장 제19조). 임기 중인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한다. 위원이 비례 대표로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의무를 결정한 규정에 따라 대체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의원 총회가 제4장 제10조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의 직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과 대체 위원을 선출한다(제6장 제20조).

각 위원회의 구성원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함께 관리체계를 담당한다. 의원 총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결정한다. 위원장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더 이상 다수 정당이 아닐 경우, 의원 총회는 새로운 관리담당체계(위원장과 부위원장)를 선임할 수 있다(제6장 제21조). 의원 총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해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 1/3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한다(제6장 제23조). 의원 총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있어 원격 출석 위원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원격 출석은 제5장 제16조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 출석한 위원 역시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제6장 제24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원 총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의원 총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시민 제안을 통해 안건을 제기한 개인이나 집단이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한다. 1. 위원회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사안. 2.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안(제6장 제25조).

위원회는 의원 총회, 기타 위원회 또는 실행 위원, 회계 감사관, 자치단체 직원 또는 특별 전문가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소집된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제6장 제26조). 위원회의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제6장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위원 자신이나 배우자, 동거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기타 친족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 해당 사안의 결과가 자신이나 상기

한 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는 경우. 2. 사안의 결과가 자신이나 상기한 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손해로 귀결되기를 기대하는 자가 있을 경우. 3. 위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 내의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 4. 위원 자신이 해당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이익을 반해 일한 적이 있는 특정인이 결부된 사안인 경우. 5. 해당 안건 처리에 있어 위원의 공정성을 훼손케 할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안인 경우(제6장 제28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사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제6장 제29조). 처리 안건에 대해 자격이 없는 자는 위원회의 회의와 처리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할 만한 상황을 인지한 자는 당연히 그에 대해 진술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이 없는 자에 관한 문제나 사안 처리에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구성에 필요하거나 지체 없이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위원인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문제의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제6장 제30조). 코뮌 또는 란스팅이 주식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에 관련된 사안이거나 코뮌 또는 란스팅이 이사회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재단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이 해당 회사 또는 재단을 대리하기 때문에 제28조 제2항과 제5항의 조항에 따라 자격 상실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개인과 공공기관이 결부된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은 다루는 위원은 이전에 다른 위원회의 사안 처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28조 제5항의 조항에 따라 자격 상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제6장 제31조). 항소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련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제6장 제32조).

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5장 제53조~제56조의 조항을 적용한다. 위원회 소집의 경우에는 단순 다수결을 적용한다(제6장 제33조). 시민 제안에 의해 제기된 안건은 가능하면 제기된 지 1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해당 사안에 대해 취한 결정 사항을 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1년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제6장 제34조).

회의는 회의록을 통해 기록되어야 한다. 회의록의 기록 방법,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의 조정 및 회의록 공표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제65조~제67조 및 제69조와 제8장 제12조의 조항을 적용한다(제6장 제35조). 위원회 관련 사항의 위임은 위원장이나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자 또는 위임에 관한 특별 결정사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제6장 제36조). 위원회는 특정 사건 또는 사건전체에 대한 결정을 위해 행정당국, 기타 위원회, 지방 의원 또는 대체 의원에게 사안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는 제7장 제5조~제8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직원이 사안을 담당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6장 제37조).

의사 결정 권한 위임의 예외	
제6장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위원회의 목표, 방향, 범위, 질에 관해 다루는 경우 ii. 자치단체가 제안하거나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치단체에 제기된 요구와 의견을 다루는 경우 iii. 기본권이나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인에 대해 행사된 공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 iv. 시민 제안에 의해 제기되어 해당 이사회로 이관된 사안인 경우 v. 기타 법령이나 법률에 의해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안인 경우
제6장 제39조	<p>이사회는 지체할 수 없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이사회가 선임한 다른 위원이 해당 사안의 처리를 담당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p>

위원회는 제37조의 조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의결 사항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장의 조항과 관련하여 항소가 제기될 수 있는 의결 사항인 경우에는 비록 공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만 한다. 제39조에서 언급된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통지되어야만 한다(제6장 제40조).

위원회의 의결권은 제37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다른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제6장 제41조).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과 대체 위

원 중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비례 선출에 관한 법률(1992:339) 제2조의 조항을 적용한다(제6장 제42조). 위원 선출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제6장 제43조). 의원 총회는 위원회의 직무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제6장 제44조).

7. 고용직(직원)

이사회는 감독관을 임명해야 한다. 감독관은 고용직원들을 이끄는 지위를 가지며, 이사회 아래에서 관리 책임자가 된다. 이사회는 감독관의 임기를 결정할 수 있다(제7장 제1조). 이사회는 지시를 통해 감독관이 관리·감독할 방식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다른 감독관의 임무도 결정할 수 있다(제7장 제2조). 감독관은 코문 또는 란스팅, 또는 코문이나 란스팅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협의회 내에서는 위탁받을 수 없다. 위원회의 사업 영역에 속하는 경영진의 장은 이사회 이사 또는 대체 이사로서 선임할 수 없다(제7장 제3조). 제4장. 자격 상실과 관련된 규정은 제6장 제28조~제32조의 조항을 적용한다(제7장 제4조).

이사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특별 사안의 해결을 담당할 수 있도록 코문 또는 란스팅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6장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7장 제5조). 이사회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제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지시를 내릴 경우, 이사회는 최고 책임자가 다른 직원을 통해 코문 또는 란스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할 수 있다(제7장 제6조). 위원회가 제5조의 조항에 따라 이사회를 대신하여 직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경우, 이사회는 의사결정 전에 해당 직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의원들이 결정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제7장 제7조).

이사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결사항 공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공표하지 않은 의결사항은 제13장의 규정에 따라 항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제7장 제8조). 의원 총회 및 회계 감사관 회의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직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제41조 및 제12장 제9조 첫 번째 단락의 조항을 적용한다(제7장 제9조).

고용인 대표(직원 대표)는 주로 위원회의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직원들 주에서 선발하여, 각 위원회별로 임명한다. 각 위원별로 최대 3인의 직원 대표와 각각의 대리인을 둘 수 있다(제7장 제10조). 직원 대표는 코문 또는 란스팅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역 또는 지역 직원 단체에 의해 임명된다(제7장 제11조). 직원대표는 제13조~제16조의 조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 감사관 회의, 환자위원회, 선거위원회 및 감독위원회에는 출석할 권리가 없다(제7장 제12조). 직원 대표는 코문 또는 란스팅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자격으로서 관계가 있는 회의에는 참석할 권리가 있다. 개인적 사안인 경우, 이사회는 직원 대표가 다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제7장 제13조).

직원 대표의 참석 권리의 예외	
제7장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개인의 관한 불특정 사안이 아닌 한,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에 관련된 사안 ii. 노동조합과의 협상 iii. 단체 협약의 종료 iv. 노사 분규 v. 코문 또는 란스팅, 노동조합 사이의 소송 vi. 재화와 서비스의 주문 및 구매에 관한 사안
제7장 제15조	직원 대표는 이사회 심의과정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장 제16조	공공 및 개인정보 보호법 (2009:400)의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직원 대표에게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장 제17조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 대표의 과실에 관한 경우에는 제6장 제28조~제32조의 조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직원 대표는 제6장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격을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의 위임자나 고용인인 경우 2. 고용조건에 관한 협의에 관한 법률(1976:580)에 따라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위임자나 고용인으로서 조직을 대표하는 경우
--	--

직원 대표는 이사회회의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방식에 의해 소집되어야만 한다. 직원 대표 대리인은 직원 대표로서의 행위를 요구받을 때에만 소집된다(제7장 제18조). 직원 대표가 출석 가능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직원 대표나 대리인이 회의에 소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제7장 제19조).

의원 총회는 고용주로서의 코문 또는 란스팅과 직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안 또는 고용주로서의 지방자치 협의회와 직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안을 담당할 공동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법령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 기구의 총회는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의원 총회가 결정한 사안의 준비, 실행, 집행에 관해 책임을 진다(제7장 제20조). 의원 총회는 규정에 준해 공동 기구의 임무, 구성, 임기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제7장 제21조). 공동 기구는 사업의 목표, 방향, 범위 또는 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동 기구는 또한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없다(제7장 제22조). 공동 기구는 코문 또는 란스팅의 대표자와 일부 직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코문 또는 란스팅의 대표자는 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거나, 의원 총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한다. 직원 대표는 지역 노동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임한다(제7장 제23조).

공동 기구의 준수 조항	
제7장 제2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유보에 관한 제4장 제27조의 조항 ii. 자격 상실에 관한 제6장 제28조~제32조의 조항 iii. 제5장 제65조~67조 및 68조와 제8장 제12조의 프로토콜 기록,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의 조정, 회의록의 조정 공표 등에 관한 조항

제7장 제25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 기구가 구성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해당 기구에 제출된 과업을 폐기할 수 있다.
----------	---

8. 참여와 투명성

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경우, 코문 또는 란스팅에 등록된 자는 누구라도 의원 총회에서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시민 발의) 이 조항은 제1장 제5조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유럽연합 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8장 제1조). 특정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국민 발의에 관한 법률(1994 692)에 따라, 코문 또는 란스팅 유권자의 최소 10%를 충족하면 실시한다. 발의안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안에 대한 설명, 서명, 서명 일자, 성명, 사회보장 번호 및 서명자의 주소가 명기되어야 한다. 발의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발의 접수 이전 6개월 동안 집계된 것만을 유효하게 인정한다(제8장 제2조). 위원회는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제8장 제3조).

의원 총회는 기타 법령과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특정 위원회가 특정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총회는 특정 사안의 경우 자치기구가 위원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 또는 제6장 제38조에 언급된 사안인 경우에는 자치기구에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없다(제8장 제4조) 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임무, 구성, 근무 방식 및 임기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자치기구가 취한 결정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에 의해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제8장 제5조). 자치기구는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자와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직원을 대표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간주한다. 자치기구의 위원회는 이용자의 제안에 따라,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대체 위원, 직원의 제안에 따라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 및 대체 위원을 선출한다(제8장 제6조). 시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의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은 직무 수행 과장에 필요한 경우 출장이 허

용되며, 의원 총회에서 선출직 대표를 위해 해당 사항에 관해 결정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8장 제7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치기구나 자치기구에 속한 개인에게 수탁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제8장 제8조).

각 코문 또는 란스팅은 웹사이트에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게시판은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웹사이트의 다른 콘텐츠와 구분되어야만 한다. 각 코문 또는 란스팅은 각각의 공관 또는 기타 장소에서도 일반 대중이 웹사이트의 게시판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8장 제9조).

게시 내용의 포함 사항	
제8장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의원 총회 회기의 공표 ii. 조정된 회의록의 공표 iii.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대표단의 결정사항의 공표 iv. 기타 법령이나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문 또는 란스팅이 결정한 회의록의 공표 v. 제13장의 조항에 의거한 항소 제기에 관한 정보 <p>게시에는 또한 기타 법령 및 법률에 따라 게시판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반 통지, 공지,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진행된 조치가 상기한 기간에 충족되었을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한 사람은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을 획득할 수 있다</p>
제8장 제11조	<p>게시는 또한 제10조의 조항에 따라 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의원 총회, 이사회, 기타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p>
제8장 제12조	<p>회의록 조정 후 2일 이내에 조정안을 게시해야만 한다. 이 게시에는 조정 회의록이 유효한 장소와 공고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게시는 제13장 제5조 첫 번째 단락에 따른 항소 기간의 만료 이전까지는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p>

코문 또는 란스팅의 게시판을 통해 조정 회의록의 채택을 공시함으로써 코문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현행 코문 규정은 코문 또는 란스팅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현행 코문 규정은 코문 또는 란스팅 법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축적된다. 변경 및 추가 내용은 웹사이트의 레지스터 또는 기타 목록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상기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규정이 다른 방법에 의해 공표되거나 제공되도록 기타 법령 및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기밀 유지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제8장 제13조). 이사회의 예산안은 예산안의 확정을 다루는 의원 총회의 회의 공지와 더불어 코문 또는 란스팅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제8장 제14조). 연례 보고서는 연례 보고서의 승인을 다루는 의원 총회의 회의 공지와 더불어 코문 또는 란스팅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제8장 제15조). 의원 총회는 의원 총회의 회의에서 일반 청중이 연례 보고서에 관해 질의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제8장 제16조).

코문 또는 란스팅, 또는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기업에 의해 민간 참여자에게 이관된 사업에 대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규정은 제10장 제3조와 제9조에 포함되어 있다(제8장 제17조). 각 위원회의 행정서비스 담당자를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기타 법령이나 법률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사실적이며, 직무 관련성이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 용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제8장 제18조).

9. 코문 간 협력

제3장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을 채택한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의 총회를 통해 결성한다. 협의회 구성 단위는 협의회 결성 이후에 협의회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9장 제1조). 본 법률에서 코문 및 란스팅의 규정을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 협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방자치 협의회가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사안을 처리할 때에는 코문 또는 란스팅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지방자치 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 조항을 지방자치 협의회에 적용한다는 기타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본 법률을 대체하여 적용한다(제9장 제2조).

지방자치 협의회에는 의사결정 조직으로서 협의회 총회를 구성한다. 해당 총회의 의원 및 대체 의원은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가 선임한다. 협의회 각 구성 자치단체는 최소 1인의 의원과 최소 1인의 대체 의원으로 총회에서 대의된다. 대체 의원의 수는 의원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제9장 제3조). 협의회 규정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총회는 4년 간 기능한다. 임기는 협의회 규정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임기는 전국 단위의 총선거 당해 연도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제9장 제4조). 협의회 총회는 협의회 집행이사회를 임명한다. 협의회가 행정당국을 구성할 경우, 해당 집행이사회는 협의회 연합이사회로 기능한다. 협의회 총회는 연합이사회와 함께 협의회 직무를 담당할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제9장 제5조).

지방자치 협의회 명시 사항	
제9장 제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 협의회 명칭, 등록 사무소가 위치할 장소, 회원 및 목적 2. 지방자치 협의회 조직, 기관, 정보 및 협의회 총회 부의장이 있을 경우 관련 임시기구. 3. 제4조에 명시된 바, 협의회 총회 의원과 대체 의원의 수,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의 수와 임기 4. 회계 감사관의 수와 임기 5. 협의회 행정당국을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당국이 감사관을 임명하는 방식 6. 협의회 구성원이 의사결정 총회에서 안건을 제기하는 방식 7. 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정족수와 해당 안건에 적용할 방식. 8. 의사결정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구성원이 제5장 제40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9. 협의회 연합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의 위원이나 대체 위원을 두지 않은 협의회 구성원이 제4장 제28조에 따른 참석 권리를 가지는 경우. 10. 규정을 공지할 게시판의 지정. 11. 규약에 명시된 바 자산과 부채에 있어 협의회 구성 단체의 참가자 간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12. 협의회 구성원의 관리 및 협의회 재정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13. 협의회 예산편성의 지침.

	<p>14. 여하한 조건 하에서 협의회회의의 회의 과정에서 일반 대중이 연례 보고서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사항.</p> <p>15. 협의회로부터의 탈퇴 절차.</p> <p>16. 협의회회의의 해산 요건 및 절차, 협의회회의의 해산 시 협의회회의의 자산변동의 기준에 관한 사항.</p> <p>17. 협의회회의와 협의회회의 구성원 사이의 분쟁 해결.</p> <p>18. 의사결정 총회의회의의 의원 및 대체 의원, 이사, 회계 감사관에 대한 재정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p>
--	---

협의회회의의 구성 자치단체는 의사결정 총회에서 해당 단체를 대표할 의원 또는 대체 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연합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의회의의 의원 및 대체 의원은 협의회회의를 구성하는 자치단체 중 하나에서 투표권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제9장 제7조). 비례 대표에 관한 법률(1992 : 339) 제2조의 조항에 따라 의사결정 총회의회의의 의원 및 대체 의원, 회계 감사관은 비례 대표되어야 한다. 규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첫 번째 단락의 조항은 의사결정 총회가 연합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의회의의 의원과 대체 의원을 선임하거나 집행 기구의 회계 감사관을 선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9장 제8조). 제11장 제8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예산 편성 절차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 협의회회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9장 제9조). 행정당국을 구성한 지방자치 협의회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당 회의는 회의 개최일 최소 1주일 이전에 협의회회의의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한다(제9장 제10조). 지방자치 협의회회의가 부채 상환을 위한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회의를 구성하는 자치단체가 해당 부족분을 충당할 의무를 가진다. 해당 의무와 관련해 협의회회의의 규약이 명시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채 비율에 상응하는 부족액의 충당을 연기할 수 있다(제9장 제11조).

제12장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회계 감사관의 선임 조항은 지방자치 협의회회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자치 협의회회의에서 회계 감사관은 의사결정 총회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 협의회회의의 연합이사회 회계 감사관은 협의회회의의 규약에 따라 선임한다(제9장 제12조). 행정당국을 구성한 지방자치 협의회회의에서 회계 감사관은 협의회회의의 각 구성원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제24조 및 제25조, 제32조, 제49조의 조항에서 언급된

의원 총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 협의회와 각 구성 자치단체에도 적용한다(제9장 제13조). 연합이사회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회계 감사관은 각 위원회의 활용 내역에 관한 특별 감사보고서를 연합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이사회는 연합이사회가 구성한 위원회의 유지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제9장 제14조).

10. 코문 담당 사안의 이관

기타 법령과 법률에 의해 코문 또는 란스팅이 처리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코문 또는 란스팅은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 사안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이관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공권력의 집행과 관련된 경우라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관될 수 있다(제10장 제1조).

지자체의 완전 소유기업(전액출자기업)이라 함은 코문 또는 란스팅이 직간접적으로 모든 주식을 보유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공동 소유기업(공동출자기업)이라 함은 코문 또는 란스팅이 다른 당사자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상업회사를 말한다(제10장 제2조).

제1조에 따라 코문 또는 란스팅이 완전 소유기업에 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이관할 경우, 의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한다. 해당 사업영역에 있어 자치단체의 명확한 목적을 정하는 것, 정관이 정한 바의 사업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의 목적과 자치단체의 권한을 설정하는 것, 모든 관리감독자를 임명하는 것, 법령의 조항을 의회가 채택하기 전에 사업활동의 원칙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최소 1인의 내부 감사관을 임명하는 것, 해당 회사 임원에게 전달되는 활동에 대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보장하는 것(제10장 제3조).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에 코문 또는 란스팅의 사업영역을 이관하고자 할 때, 의회는 소유 비율, 성격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제3조에서 언급한 조건에 합리적인 정도로 부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안전 및 기밀유지법(2009:400) 제2장 제3조에서 다루지 않은 코문의 공동 소유기업과 관련하여, 의회는 제2장의 언론 자유 및 공공안전 및 기밀 유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 대중이 해당 회사의 문서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0장 제4조).

의회는 제12장 제4조의 조항에 따라 선임한 회계 감사관 중 1인을 완전 소유기업 또는 공동 소유기업의 내무 감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제10장 제5조).

제3조는 코문 또는 란스팅이 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원 총회는 해당 재단에 최소 1인의 감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의회는 제12장 제4조의 조항에 따라 선임한 회계 감사관 중 1인을 재단의 내무 감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4조의 조항은 코문 또는 란스팅이 다른 자와 함께 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위한 학회를 구성하거나 코문 또는 란스팅이 다른 자와 함께 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위한 협회를 구성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 항목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목적과 관련해, 제3조의 조항은 재단의 협회 또는 재단의 상위 재단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한다(제10장 제6조).

민간 사업자란 제1조의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 관련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민간 사업자는 코문 또는 란스팅이 완전히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6조에서 언급된 재단과 협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제10장 제7조). 자치단체 관련 사업의 관리가 계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관된 경우, 코문 또는 란스팅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장 제8조). 코문 또는 란스팅이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코문 또는 란스팅은 정보협약을 통해 대중에 대한 해당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제10장 제9조).

11. 재무관리

코문 또는 란스팅은 코문 또는 란스팅의 활동 및 제10장 제2조~제6조에서 언급된 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있어 적절한 재무관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원 총회는 코문 또는 란스팅의 재무관리 지침을 결정한다. 코문 또는 란스팅이 제14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유보의 상황에 있을 경우, 지침에서는 해당 상황의 처리 역시 다루어야 한다(제11장 제1조).

코문 또는 란스팅은 좋은 결과와 안전망을 위한 요구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1장 제2조). 의원 총회는 보도관리 지침을 결정한다(제11장 제3조). 제3조의 조항에 추가하여, 의원 총회는 연금을 위한 자금 관리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자금 관리의 방식을 규정한다. 자금 편성 시 위험요소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금 관리에 있어 관리감독과 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제11장 제4조).

코문과 란스팅은 매년 익년 회계 연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14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익 보유에 따른 자금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1장 제5조). 예산안에는 세율과 세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산안에는 자금 조달 방법과 회계 연도 말에 재무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안에는 재무관리에 필수적인 재무관리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산안에는 회계 연도에 대한 운영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운영계획은 적절한 재무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목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안은 또한 향후 3년간의 경제 분야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예산안이 다루는 회계 연도는 해당 계획의 첫 해로 한다. 해당 경제 분야 계획에는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재무관리의 목표가 명시되어야 한다(제11장 제6조). 의원 총회는 특정 위원회에 자금을 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제11장 제7조).

예산안은 10월말 이전에 이사회가 준비한다. 회계 감사관 활동에 대한 예산안은 같은 날짜까지 사무국이 준비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1월에 예산안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는 10월 말 이전에 익년 회계 연도의 예비 소득세에 포함된

지방세 세율을 제출해야 한다(제11장 제8조).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특별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시기를 결정한다(제11장 제9조). 예산안은 11월말 이전에 의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전국 단위의 총선거가 실시된 해의 예산안은,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의원 총회가 확정한다(제11장 제10조). 특별한 사유로 인해 11월말 이전에 예산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지라도, 의원 총회는 세율과 장례법(1990:1144) 제9장의 조항에 따른 장례비용의 세율은 11월말 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은 12월말 이전에 확정한다. 의원 총회는 기존의 것과 다른 세금 및 세율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제11장 제11조).

제11장 제11조	<p>폐기:2019년 1월 1일/ 지방 회계에 대한 법률(1997:614) 제4장 제3a조에 따라 특정 회계 연도의 대차대조표 결과가 부정적이면, 향후 3년 동안 규제한다. 의원 총회는 해당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규제에 관한 결정은 늦어도 부정적 대차대조표 결과가 발생한 당해 연도의 익년부터 3년 이내에 취해야 한다</p>
제11장 제12조	<p>발효:2019년 1월 1일/ 지방 회계 및 재정에 관한 법률(2018:597) 제11장 제10조와 관련해 특정 회계 연도의 대차대조표 결과가 부정적이면, 향후 3년 동안 규제한다. 의원 총회는 해당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규제에 관한 결정은 늦어도 부정적 대차대조표 결과가 발생한 당해 연도의 익년부터 3년 이내에 취해야 한다. 법률(2018 :600)</p>
제11장 제13조	<p>의원 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 대차대조표 결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p> <p>폐기: 2019년 1월 1일/ 자치단체는 균형예산의 원칙을 통해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는 지방 회계에 대한 법률(1997:614) 제4장 제3a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결과에 입각하여 해당 연도의 수입의 전부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의 일부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전체 조세 수입 및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균형 재정액의 1%, 연금 부문 등을 포함하여 코문 또는 란스팅의 대차대조표 결과가 부정적으로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조세 수입 및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균형 재정액 총합의 2%</p>
제11장 제14조	<p>발효: 2019년 1월 1일/ 자치단체는 균형예산의 원칙을 통해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는 지방 회계 및 재정에 관한 법률(2018:597) 제11장 제10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결과에 입각하여 해당 연도의 수입의 전부 또는</p>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의 일부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전체 조세 수입 및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균형 재정액 총합의 1%, 연금 부문 등을 포함하여 코문 또는 란스팅의 대차대조표 결과가 부정적으로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조세 수입 및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균형 재정액의 2%
제11장 제15조	의원 총회에서 당해 회계 연도 중 지출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에는 지출의 방법에 대한 방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장 제16조	폐기:2019년 1월 1일/ 의원 총회는 지방 회계에 대한 법률(1997:614) 제9장 제1조에 따라 작성된 최소 1개 이상의 중간보고서를 처리해야 한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중간보고서를 의원 총회 및 회계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

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는 해당 기구가 관리하는 자금을 대한 회계를 유지해야 한다(제11장 제17조).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가 이전 회계 연도의 관리상황을 이사회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할지 결정한다(제11장 제18조).

이사회가 다른 위원회의 회계 자료를 수집하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제11장 제19조). 연례 보고서는 의원 총회 및 회계 감사관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출하되, 연례 보고서에서 다루는 해당 연도의 익년 4월 15일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제11장 제20조). 연례 보고서는 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제5장 제24조의 조항에 따라 실격 처리를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제11장 제21조).

코문 또는 란스팅은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산의 취득 시에는 자산에 대한 담보로서 확보한 이전의 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11장 제22조).

자치단체의 세율 및 장래 비용에 대한 세율 고시에 관한 이사회 의무조항은 자치단체 및 기타 종교단체 등의 과세에 관한 특별 조항과 함께 법률(1965:269)에 포함되어 있다(제11장 제23조).

12. 감사

회계 감사관은 공정한 감사의 원칙을 준수하여, 매년 각 위원회 및 의회위원회의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관은 제10장 제2조~제6조의 조항에 따라 법인에 의해 임명되어 법인 활동을 검토하는 감사관의 활용 역시 매년 검토해야 한다. 회계 감사관은 각 사업이 적절했는지, 경제적이었는지, 만족할만하게 관리되었는지, 회계 장부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감사를 통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범죄가 의심되거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사관은 관련된 각 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보고 이후에도 이사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관은 해당 사항을 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그러한 의심이나 위반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감사관은 의원 총회에 의심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혐의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제12장 제1조).

회계 감사관은 제11장 제16조의 조항에 따라 의원 총회에서 다루는 중간보고서의 결과를 제공받아야 하며, 연례 보고서는 의원 총회의 목적과 부합하여야 한다. 감사관의 서면 평가는 중간보고서와 연례 보고서의 심사 전에 의원 총회에 제출되어야만 한다(제12장 제2조). 회계 감사간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코뮌 또는 란스팅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사안인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에 관한 법률(1993:387)과 사회보장법(2001: 453)에 따라 각 위원회로 하여금 스스로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가 적용되는 경우, 감사결과가 각 위원회의 행정법원 결정사항의 집행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 감사가 여론에 근거한 것일 경우(제12장 제3조).

전국 단위의 총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지방의회는 향후 4년 간 해당 영역에서의 활동을 감사할 회계 감사관을 선임해야 한다(제12장 제4조). 모든 사업 영역에 걸친 전반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최소 5인의 감사관이 선임되어야 한다. 특정한 또는 특별 위원회의 사업 활동에 대한 특별 감사를 위해서는 각 위원회나 위원회 그룹 별로 최소 5인의 감사

관이 선임되어야 한다(제12장 제5조). 회계 감사관이 임기 중 사임할 경우, 의원 총회는 나머지 임기 동안 활동할 회계 감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제12장 제6조).

각 위원회, 의회 위원회, 개별 의원, 대체 의원 및 직원은 감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회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회계 감사관에게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회계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나 의회에 대한 보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2장 제9조).

의원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회계 감사관은 감사 임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다(제12장 제10조). 회계 감사관의 직무 및 자격 상실과 관련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5장 제65조~67조 및 69조와 제8장 12조의 조항에 따라 회의록의 방식, 내용, 조정 방법 및 조정 내용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 감사관의 회의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12장 제11조).

회계 감사관은 매년 전년 회계 연도의 활동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 자문 보고서 역시 감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스웨덴 회사법(2005:551) 제 10장 제5조에 따라 제10장 제2조에 언급된 유한회사에 제출된 점검 보고서 역시 감사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코문 또는 란스팅이 포함된 지방자치 협의회에 대한 감사 보고서 역시 제9장 제13조의 조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10장 제2조~제6조에 따라 코문 또는 란스팅이 유한회사, 영리회사 및 금융기관에 이관한 코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점검 보고서 역시 감사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제12장 제12조).

논평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제출한다. 각 위원회 및 의회 총회, 해당 기구의 선출된 대표자. 감사 보고서에는 논평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감사 보고서에는 또한 책임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제12장 제13조).

회계 감사관의 자격 상실과 관련된 조항은 제6장 제28조의 내용을 적용한다(제12장 제14조). 불편부당함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명백히 부적절한 것일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제12장 제15조). 특정 사안에 적합하지 않은 회계 감사관은 해당 사안의 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회계 감사관은 사안 처리의 지연 없이는 누구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계 감사관 자신의 과실로 추정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을 인정한 회계 감사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회계 감사관(들)에 대해 기만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 회계 감사관은 공동으로 신속하게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문제가 된 자는 다른 누군가가 지체 없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나 감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제12장 제16조). 이의 제기는 결정이 내려진 사안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제12장 제17조).

13. 적법성

코문 또는 란스팅의 각 구성원은 행정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동위원회에 참여한 코문 또는 란스팅의 각 구성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 협의회에 참여한 코문 또는 란스팅은 지방자치 협의회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3장 제1조).

다음과 같은 경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의원 총회나 지방자치 협의회 의사 결정 회의의 의결 사항, 전적으로 준비단계에 있거나 집행단계에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각 위원회 및 공공기구에서 내린 결정 사항, 전적으로 준비단계에 있거나 집행단계에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 협의회 또는 기타 위원회 및 공동 기구로부터 내려진 결정 사항, 제12장 제11조의 조항에 따른 회계 감사관의 결정 사항(제13장 제2조). 본 장에서 다루는 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은 기타 법령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3장 제3조).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심판 청구인은 서면에서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것인지와 심판 청구의 이유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심판 청구는 행정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제13장 제4조).

심판 청구는 코문 또는 란스팅 또는 지방자치 협의회를 통해 의결 사항이 공지된 날짜로부터 3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공동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코문 또는 란스팅이 의결 사항을 공지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해당 내용은 심판 청구 기간의 만료 전까지 공지되어 있어야 한다(제13장 제5조). 심판 청구 이전에 심판 청구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심판은 행정법원이 아닌 코문 또는 란스팅 또는 지방자치 협의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동 위원회에 대한 심판 청구가 공동 위원회에 속한 코문 또는 란스팅 중 하나에 접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13장 제6조).

심판 청구를 심사함에 있어, 행정법원은 심판 청구의 기간 만료 이전에는 청구인이 명시한 것 이외의 조건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제13장 제7조). 다음과 같은 경우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의사 결정 사항이 코문 또는 란스팅과 관련이 없을 경우, 해당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조직이 내린 의사 결정 사항에 관한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의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기 조항 중 제3항과 제4항은 제11장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 12조, 제 13조, 제14조의 유보금 사용의 결정과 관련된 조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의사 결정 사항을 다른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다(제13장 제8조). 해당 사안의 결과와 관련하여 오류가 없을 경우, 의사 결정의 내용은 취소될 수 없다. 이 조항은 의사 결정이 추후의 사건의 결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13장 제9조).

행정절차법(1971:291)에 따라, 코문 또는 란스팅 또는 공동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 협의회를 재판의 당사자로 간주한다(제13장 제10조). 행정절차법(1971:291) 제5조에 따른 조항은 심판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건을 심판 청구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소재가 없는 보다 나은 사안을 결정할 권리에 관한 동 행정절차법의 제29조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제13장 제11조). 행정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1971:291)에 명시되어 있다. 심판 청구 절차에는 사전 심사가 요구된다(제13장 제12조).

행정법원 또는 상공회의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인만이 항소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코문 또는 란스팅의 의사 결정을 중시시키거나 집행을 금지한 경우에는 코문 또는 란스팅, 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자치 협회나 공동 위원회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집행을 금지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 협의회 또는 그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 협의회 의 구성원으로 있는 코문 또는 란스팅의 구성원이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3장 제13조).

판결이 종결되고 이에 대한 내용의 발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판결을 받은 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내용을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결의 수정에 관한 결정 사항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제13장 제15조).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시사점

제2절 결 론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시사점

지금까지 스웨덴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헌법에 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은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조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모든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스웨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과 보통 평등 선거에 기초한다. 이것은 대의적이고 의회형식의 정부와 지방자치정부(local self-government)를 통해 실현된다. 공권력은 법률에 의해 행사된다”

실지로 지방자치의 핵심 이념이 민주주의인 만큼 헌법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와 지방정부를 차별하지 않고 민주주의 실현수단과 공권력의 집행기관으로 헌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위상을 매우 공고히 세워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헌법 개정에도 좋은 본보기라고 판단된다.

둘째, 스웨덴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 2개의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한 제 8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의 빈곤을 들 수 있다. 비록 지방자치법으로 내용적인 보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단 2개의 조문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공허한 보장에 그칠 우려를 좀 더 줄여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개정에서 입법자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법원에서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판단기준도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지방자치 규정이 지나치게 빈곤하고 추상적인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다수세력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변질 내지 왜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스웨덴의 경우 정보조직법 제1장 제7조, 제8조, 제7장 제2조, 제7조, 제8장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12장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4장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5장 제6조, 제12조 등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조문의 수가 훨씬 많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스웨덴에는 사실상 조세법률주의가 아닌 지방세조례주의가 도입되어 있다.

스웨덴은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4장 제4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뮌법에 의하면 코뮌과 란스팅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1장 제3조). 사실상 코뮌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100%이며 국가 보조금은 없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헌법적으로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정치체제로 볼 수 있다.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3대 권리라고 불리는 자치재정권이 조속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통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스웨덴에서는 복지관련 사무를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결정하자 정부(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된바 있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에 대해 주무부서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이러한 사건들은 전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새로운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정부와의 협의(동의 또는 합의에 가까운)를 거쳐야지 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감면 위험에 노출되면서 까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신한 정책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정책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적지 않았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란스팅(Landsting)의 주요 역할로는 랜(Län)의 대중교통과 공공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해당되며,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보다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인 코뮌(Kommun)은 주택, 도로, 상수도 및 폐수 처리, 학교, 공공 복지, 노인 복지, 아동보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관할한다. 란스팅(Landsting)처럼 코뮌(Kommun)도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코뮌(Kommun)은 또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며,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진다. 더구나 스웨덴 사회서비스법은 코뮌이 자신

의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는 코뮌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약물 및 알콜 중독자, 노인, 장애인, 친척을 돌보는 사람, 범죄 희생자들은 특히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의 경우 복지사무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멀지 않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사회개혁정책의 도구임과 더불어 스웨덴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다섯째, 스웨덴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점차 지방분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1982년 당시 스웨덴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요구되었으며 그 방편이 지방분권의 강화였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스웨덴 사민주의 사상과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결정권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스웨덴은 지방정부를 공식적으로 자치정부(Self-government)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들 사이에 평등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행정시스템은 위계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이다. 반면 한국은 권한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는 지역불균형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 나아가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웨덴 헌법(정부조직법) 제14장 제3조에는 자치단체의 자치행위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그 조치가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필요성보다 더 포괄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는 자치행위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지방자치의 사실상의(de facto) 강화를 의미할 수 있다.

제2절 결 론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했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날 스웨덴의 지방분권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지로 스웨덴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했고,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지역 발전 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의 핵심은 바로 통치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 분산 이동임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정치 분석과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스웨덴 사회에서 지방분권화는 중앙 권력의 분권화(수평적 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수직적 분권)의 성공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지방 자치 완성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다윗(2017), 지방분권 개헌/제2국무회의, 국토 2017년 12월호(통권 제434호).
- 김철주(2016), 1969년 스웨덴 헌법 개정이후 의료체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 연구.
- 문병효(2017), 지방분권과 개헌, 토지공법연구, Vol.79.
- 미야모토 타로 저, 임성근 옮김, 2011, 『복지국가전략(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 변광수, 김인철, 박노호(1995), 복지국가 스웨덴의 지방자치 - 균형적 지역발전의 모델.
- 박노호(2015), 스웨덴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증, 한국국제지역학회보 제4집.
- 박승희 외(2007), 스웨덴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 박현숙, 『세계언어백과-스웨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 이수형(2004), 다층 거버넌스로서의 유럽연합체제, 세계지역총연구.
- 임승빈(2015), 지방자치론, 법문사.
- 한귀연(2010),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한 연구, 공법학연구 13권 13호.
- Byrkjeflot, H., & Neby, S. The decentralized path challenged? Nordic healthcare reforms in comparison. Stein Rokkan Centre for Social Studies. 2004.
- Fwlrwniua, S. (2015), Multi-Level Governance as ‘Post-Constitutional’ Politics: Subnational Actors and the Swedish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41.

Lidström, A (2004), Multi-level Governance - the Case of Umeå , Center for Regional Science in Umeå University, Working Paper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weden(2014), National Social Report 2014 - Sweden

Montin, S. (2011). Swedish Local Government in Multi-level governance, The Road to Europe: Main Road or Backward Alley for Local Governments in Europe?, Chapter: Swedish local government in multi-level governance, Publisher: Vanden Broele, Editors: REYNAERT, H, STEYVERS, K, VAN BEVER, E

Pierre, J (2016), The Oxford Handbook of Swedish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Regeringen(2008), Kommuner och landsting - organisation, verksamhetoch ekonomi.

Sveriges Riksdag (2016), The Constitution of Sweden- the fundamental laws and the riksdag act.

Wagenaar-Kroon, L and Mosler-Tornstroms, G (2013), Local and Regional Democracy in Sweden,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p 8.

<https://www.informationsverige.se/Engelska/Samhalle/Samhallsorientering/Pages/S%C3%A5-fungerar-din-kommun.aspx>

<https://skl.se/tjanster/englishpages/municipalitiescountycouncilsandregions/swedensdemocraticsystem.1301.html>

<https://repository.law.umich.edu/cgi/viewcontent.cgi?article=1456&context=articles>

http://www.mlit.go.jp/kokudokeikaku/international/spw/general/sweden/index_e.html

<https://www.government.se/how-sweden-is-governed/the-swedish-model-of-government-administration/>

헌정제도 연구 18-20-⑦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스웨덴 -

2018년 9월 28일 인쇄
2018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익 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85-0 93360

저자명(책임)

홍 세 영

학 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연구실적 및 논문

스웨덴의 민영화와 보건의료법의 성격에 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 다문화 법적 체계 및 통합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4차산업혁명과 보건의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 스웨덴의 스마트 헬스케어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 여성영화인의 양성평등 정책과 법제에 관한 연구

예술흥행지자소비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조사 외 다수

저자명(공동)

박 현 속

학 력

스웨덴 옘살라대학교 언어학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학과

연구실적 및 논문

Code-switching or borrowing?: A much-discussed topic in the code-switching literatu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roper nouns in Korean-Swedish discourse
Korean Adoptees in Sweden:

Have they lost their first language completely?

Korean Swedish code-Switching
Theoretical models and linguistic reality 외 다수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스웨덴 —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 788966 848850

ISBN 978-89-6684-885-0

값 7,000원